

제438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8월25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행정안전부 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 인사혁신처 소관
 - 경찰청 소관
 - 소방청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행정안전부 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경찰청 소관

상정된 안건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 행정안전부 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 인사혁신처 소관
 - 경찰청 소관
 - 소방청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2
 - 행정안전부 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경찰청 소관

(10시02분 개의)

○소위원장 박주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안 오셨는데요. 그런데 개의할 수 있는 요건은 돼 가지고 일단 개의하고 진행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 들으신 대로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주민입니다.

앞에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나리오 다 건너뛰고요.

위원님들 인사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행안위 소관 기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진화위 하고 그다음에 이태원특조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차관, 행안부 재난본부, 경찰청, 인혁처, 선관위, 소방청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심사 방법은 소위 심사자료를 토대로 전문위원께서 먼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보고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 토론을 거쳐서 시정요구 또는 부대의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요구는 그 유형도 추가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으로 구분 되고 예결위에서 시정요구별로 시정요구유형을 1개씩만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라. 인사혁신처 소관

마. 경찰청 소관

바. 소방청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라. 경찰청 소관

(10시04분)

○소위원장 박주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화위 소관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상임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장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화위 제3 상임위원인 장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진짜 간단히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해서 시정요구사항 등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황승기 황승기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진화위 조사활동 종료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당초 예산현액이 22억 780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15억 39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행안부에 이체되었습니다. 특히 조사활동이 5월 26일 종료인데 국내여비 예산은 전년 대비 크게 감액되지 않아서 75% 이상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해 소요금액을 정확히 추산해서 적정 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영배·이광희 위원님께서 제2기 종료와 제3기 위원회 출범 간에 원상복구비용 지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2기 활동 종료에 따른 사무실 임대차계약 만료로 원상복구비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해당 금액을 공사계약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임대인은 이후 이 예산을 원상복구가 아닌 3기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요구 관련해서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인건비 예산 요구 시 적정 소요를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진화위는 22년부터 25년까지 공무원보수 목에서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세목 조정을 통해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요구 시 적정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포상금 집행에 있어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화위는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포상금 목뿐만 아니라 기타 운영비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운영비는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포상금은 포상금 비목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8페이지 보시면 기존에 포상금 비목에 포함된 예산이 충분해서 기타운영비 비목에서 지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포상금 등은 포상금 비목에서 지급하도록 해서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까지 보고 잘 들었고요.

진화위 측 의견 주실까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장영수 일단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신경 써서 개선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는 조금 변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2기 진화위가 종료되고 3기가 시작되면서 인적·물적 승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기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3기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화위가 다른 기관과는 달리 한시기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료시점이 예정되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2기 진화위 말기에는—지금 현재 이태원특조위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직원들이 상당수가 빠져나갑니다.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빠져나가고 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직원들은 업무가 과중해지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 중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75% 이상 미집행되었다는 부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인정하고요. 그런 과거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3기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예상보다도 이 폭이 더 컸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여비 집행도 적어지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원래 예상으로는 모든 신청 사건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한 2111건이 조사 중지되고 끝났습니다. 그 얘기는 그 조사 중지된 사건을 위해서 편성된 여비 같은 것도 집행되기가 어려웠었다. 그런 점이, 2기 때 저는 비상임이었습시다만 같이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2기 진화위가 종료되면서 처리되었던 것이…… 3기 진화위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특수한 상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기 진화위가 종료되고 나서 여러 가지 업무의 문제, 시간의 문제 등 때문에 원상복구를 직접 공사를 하는 대신에 임대인 쪽에다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임대인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 계약을 집행해서 원상복구를 하기 이전에 3기 진화위가 불과 몇 달 사이에 출범하게 되면서 그 시설로 다시 들어가게 된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남산스퀘어빌딩이라고 진화위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

○소위원장 박주민 상임위원님, 죄송한데요. 말씀 주실 때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듣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 주의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은 주의가 아니라 뭡니다. 이유는 뭡니다’ 이런 식으로 두괄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장영수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길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 순서로 얘기하시면 저희가 듣고 정리하기가 좋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장영수 기본적으로 항목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주의하신 것을 수용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수 상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걱정하지 못했다, 정확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타당한 지적이시고 그런 주의를 염두에 두고 향후 인건비 편성을 훨씬 더 정확하게 할 것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실무진을 총괄하고 계시는 여기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 쓰시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지켜질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서도 비목과 관련 없는 지출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관련해서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다수의 직원들이 중도에 퇴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남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고려들이 작용해서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상임위원님이 지금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냈던 시정조치유형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다, 다만 특수성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장영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것을 전제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도, 진화위도 저희들 요구사항을 다 수용했고 특별히 질문 없으니까 이거는 원안대로 의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위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우리 소위가 논의한 시정요구를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화위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태원특조위분들은 다 들어오신 거지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예.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다음은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련된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사무처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안녕하십니까?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박진입니다.

평소 저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주민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식 위원 위원장님, 이태원 이게 없는데요?

○서명옥 위원 없는데……

○진종오 위원 없는데요.

○이상식 위원 자료는 없어요?

○소위원장 박주민 자료 없어요.

○서명옥 위원 왜 자료가 없어요?

○소위원장 박주민 질의가 없어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계속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진행 과정에서 충실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방금 위원님들이 좀 놀라셨는데 자료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방금 설명 들으신 대로 서면질의 등을 통해서 시정요구나 부대의견을 제출하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식 위원 혹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는습니까?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항상 예산은 부족하겠지요.

○박상웅 위원 언제쯤이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지금 연장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9월 16일로 이해식 의원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키로는 9월 16일에서 종합보고서를 한 차례 연장하면 내년 12월 16일, 법안이 연장된다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작년 예산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124억이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거기서 36억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2025년도 저희가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고 사무처 구성이 늦어지면서 조사개시가 6월 17일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서명옥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연장이 되면 내년 10월까지잖아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내년 9월

16일입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무조건 마무리시키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약속하시지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예.

○소위원장 박주민 어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 위원장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 사정이 있습니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사개시 결정이 6월 17일 날 됐는데 사실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이 계상됐는데 문제는 자료 확보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워낙에 준비된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조사 개시를 자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요. 이런 종합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간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간 내에는 다 맞춰 달라라고 얘기하신 건, 일단 기간 연장에 동의하시는 것 같고 연장된 상태에서 잘해 주시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추가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을 했고요.

더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정요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조위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안부 다 자리하셨지요?

다음, 행안부차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행안부차관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예결위 결산심사소위 참석 관계로 김주이 기조실장님께서 대신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주이 기조실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김주이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주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왔습시다만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향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시정요구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수석전문위원 장지원입니다.

행안부차관 소관 자료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23건을 논의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기초실과 인공지능실 소관 3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장애인 고용 확대 및 개선 계획 마련 필요로서 지적사항은 공무원 근로자 등 행안부의 비공무원 장애인고용률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문제가 있고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 조정에 대해 그동안 결산심사에서 지적을 받아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안부는 공무원 근로자 등 직군의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과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발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번, 화재피해복구 예비비의 적정한 편성·집행 필요로서 지적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피해복구 사업에 예비비 320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공사비 59억 원이 이월되고 91억 원이 불용되어 공사비에 배정된 예비비가 회계연도 내 집행되지 못한 채 실제 복구 공사는 사실상 이·전용을 통하여 확보한 예산으로 집행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행안부는 향후 재난·사고 등에 따른 예비비 배정 단계에서 사업별 추진 일정, 소요액 및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집행 가능 범위에서 예비비를 배정하고 배정된 예비비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예비비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할 것이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AI·정보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로서 지적사항은 AI 행정업무 적용 사업의 예산 4900만 원은 사업 기간 부족을 이유로 이월하였으나 계약 단계에서부터 사업 기간이 2026년 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계약 당시부터 사업 일정 및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행안부는 향후 AI·정보화 사업 추진 시 사업규모와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계약기간 및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 및 사업 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먼저 1번부터 3번까지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3건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위원님들 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이상식 위원 여기 비공무원 장애인, 비공무원 장애인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보통 청경이나 환경미화공무원 등 이렇게 공무직을

의미합니다.

○**이상식 위원** 청경이나?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특히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청사 방호를 위해서 공무원인 방호관 외에 청경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 분들 장애인으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조금 애로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 이렇게 지적되고 또 법상 저희가 채워야 되는 의무비율도 있어 가지고…… 어쨌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어제 그런데 김예지 위원이 개선 계획 같은 거 요구했는데 어제 그래서 약간 소란스러웠잖아요, 질의를 좀 철회해 달라라고 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거는 아니고요. 보통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이렇게 질의라든지 또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게 오면 저희가 설명을 하고 가급적 조금 빼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질의를 빼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런 정도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하는 거를 마련을 해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서명옥 위원** 실장님, 왜냐하면 이렇게 장애인 근로자를 규정에 따라서 채용하는 건 정말 장려하고 좋은 일인데 장애인 근로자의 직원을 쓰임새 있게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직은 주로 미화원이 많잖아요, 천경. 전부 다 이거는 정말 신체 건장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잘 아시잖아요.

더구나 공공청사에는 정말 민원 넣는다고 떼거지로 몰려와서 하면 정말 물리적으로 막아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 고용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적합지 않아 보이는데…… 매년 지적 당하고 있잖아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걸 스스로 조금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그 비율 안에서 제외를 시켜 달라고 건의도 좀 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명옥 위원** 아니면 다른 직군의 퍼센티지를 더 까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경찰과 같은 수준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의무비율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도 수차례 했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거를 열어 주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열어 줘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저희가 그래서 다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의 정도가 조금 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청경 파트에도 지금 채용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명옥 위원** 궁극적으로 목적은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른 부분을 열어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는 고용부하고 조금 얘기를, 소통이 잘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하나 여쭙볼게요.

장애인 고용기준에 있어서 장애인도 여러 분류, 등급이 나뉘져 있잖아요. 지체장애가 있고 지적장애가 있고 그런 기준이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나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장애인 채용비율에 있어서는 그렇게 구분……

○진종오 위원 비율이 아니고 지체장애인이냐 지적장애인이냐 이런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고용노동부에 기준이……

○진종오 위원 확인하고 나중에 보고 주세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그건 고용노동부 통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4번부터 8번까지 자치혁신실 소관 5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정책연구용역 연간 추진계획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로서 지적사항은 국민통합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추진 건수가 2024년 10건에서 2025년 5건으로 감소하였고 그 5건도 모두 9월 이후 하반기에 착수하는 등 하반기에 연구용역 발주가 집중되면서 연간 연구계획 수립 및 일정 관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지적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국민통합위는 기초·상시 연구와 신규 정책연구과제를 구분하여 연간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과제 선정·심의 발주 절차를 회계연도 초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연구용역의 집행부진 및 연말 집중 발주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선거 관련 예비비의 합리적 편성 필요로서 지적사항은 공직선거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역대 대통령선거 등의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89억 원의 예비비가 실제 필요한 규모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으며 지난 6·3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어 실질적인 선거관리 기간이 58일에 불과하였음에도 행정실무원 인건비는 4개월, 전산 장비 임차료 등은 3개월을 기준으로 예비비를 산정하는 등 실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적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행안부는 향후 선거 관련 예비비 편성 시 선거 유형별 준비기간, 과거 비목별 집행실적 및 실제 집행수요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비비의 과다 편성과 대규모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참고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 두 가지 들어온 것은 위원님께서 각각 하나 지적하셨던 것이고 만약 이것을 시정으로 하신다면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참고로 주의는 어느 위원님이셨고 제도개선은 어느 위원님이셨지요? 그것도 알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주의가 박상용 위원님, 제도개선이 정춘생 위원님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다음, 6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장기 미집행 사업 집중 관리 및 실제 소요액에 근거한 운영경비 지급 필요로서 지적사항은 2025년 말 기준 지자체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3조 5379억 원 중 사용되지 않은 재원이 9507억 원을 초과하고 미집행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이 84억 원을 초과하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실제 인건비 지출액이나 남은 금액을 확인·정산하는 절차 없이 파견공무원 소속 지자체에 일인당 연 1억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장기 미집행 사업을 집중 관리하여 집행을 촉진하고 파견공무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는 실제 소요액을 기준으로 지급·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7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성과 관리 강화 및 집행관리 개선 필요로서 지적사항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자펀드 결성과 투자 집행이 지연되어 모펀드 재원이 실제 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유보·미집행되고 있어 결산상 집행실적과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투자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것으로써 하단을 보시면 자펀드로 출자된 금액은 212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788억 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유보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행안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성과 관리 시 모펀드 조성액과 실제 지역사업 투자액을 구분하여 관리·공개하고 장기간 투자되지 않는 재원이 적기에 지역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8번,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 집행관리 개선 필요합니다.

지적사항은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교부액 중 실집행액은 18억 원으로 실집행률은 60.8%에 그쳤으며 일부 지역의 실집행률은 10% 미만으로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행안부는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 보조금 교부 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상황과 사업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사업 단계별로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만 교부하도록 집행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정부 측 의견 주세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5번부터 8번까지 안전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니까 5번에 대해서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 점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저는 이거 좀 궁금한데 7번 항목에 자펀드 결성하고 투자 집행이 지연된다 그러는데

이유가 뭐예요, 자펀드 구성이 잘 안 되는 게 좀 짐작은 되는데?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주 기본적인 사유는 수익성이 없다라고 보는……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니까요. 그게 앞으로도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래서 저희가 조금 수익성을 높여 가지고 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일단은 제도개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만 하더라도 500억으로 펀드 금액을 줄였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줄였어요, 500억으로?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이게 잘하면 좋겠는데 언뜻 생각해 봐도 수익성을 높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말이에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설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공 부문에서 많이 부담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뒤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500억으로 규모가 줄었는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한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것은 돈을 내는 주체가 민간인들입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단 모펀드는 예산 편성해 가지고 1000억이 들어가 있고요.

○이상식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투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없습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자펀드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소위원장 박주민 자펀드로 들어오겠지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상식 위원 안 되는 거네, 그러면.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래서 자펀드로 들어온 부분이, 212억이 민간에서 투자된 부분입니다.

○이상식 위원 212억이 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모펀드가 1000억은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광희 위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용은 누가 하는 거지요? 조직도 만들어진 거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 운영은 담당 과장이 잠깐……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장 김민정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관리·운용을 하고 있고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운용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운용사 따로 있지요?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장 김민정 예, 운용사가 따로 있고요.

○이광희 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조직 만들지 말라고 계속 그랬는데 결국은 이 사태가 온 거잖아요. 처음에 이거 1조씩 주게 된 것 중에서 1000억씩 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온 것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그래서 애초에 위원들이 얘기할 때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 조직 구성하고 있는 분들 퇴직 공무원들이시지요?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장 김민정** 조직 구성 민간 운용사에 맡기고 있고요.

○**이광희 위원** 왜 민간 운용사를 또 둥니까? 이걸 원래는 1조에 대해서 1000억씩 다 지역별로 주게 돼 있는 것을 1000억을 그중에서 빼 가지고 민간을 왜 또 운용하게 만드냐고요.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장 김민정** 현재 모펀드는 지방소멸……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왜 모펀드를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이거. 애초부터 이거는 처음부터 설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해 주세요, 8번까지의 항목에 대해서요.

○**진종오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5번에 대해서 박상용 위원님은 주의를 요구하셨고 정춘생 위원님께서도 제도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정부 측에서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제도개선으로 정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속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9번부터 15번까지 지방경제실 소관 7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9번,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필요로서 지적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자체 유형별로 국비지원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이 사업에서 주로 비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있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비수도권보다 1% 높은 6% 국비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제도개선입니다.

10번, 지역사랑상품권 배분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로서 지적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하여 국비 집행 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와 비수도권은 계획액보다 각각 75억 원, 818억 원이 초과하였고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계획액보다 각각 342억 원, 551억 원이 미달하였는데 이는 지역 유형별로 국비배분액을 설정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행안부는 자치단체 유형별 국비배분액이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에 국비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등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추경 회차별·지자체별 교부액과 실제 지원율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 사업계획 미흡에 따른 예산 전용·불용 방지 필요로서 지적사항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당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한 자산취득비를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로 전용하고 이 중 일부를 불용하는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행안부는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같은 긴급재난지원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전용이나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주의할 것이며 그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12번, 대규모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 구조 개선 필요로서 지적사항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국고보조율을 서울 75%, 그 외 지역 9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약 1조 6820억 원의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였고 실제 지방비 부담률은 대전 1.96%, 광주 1.74%인 반면 전남 0.82%, 강원 0.88% 등으로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지자체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역진 현상이 나타났으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지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행안부는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같은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지자체별 재정과 지원 대상 규모 등 실제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국고보조율을 차등하는 등 지방비 부담 구조를 개선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3번, 현금성 지원사업 미수령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로서 지적사항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은 전체 직업 대상자 중 약 165만 명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정보 제공 및 신청 절차 등 정책 전달체계의 문제로 미신청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장애인 등 정보·이동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행안부는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같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사업 추진 시 미수령자의 특성 및 미수령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책 접근성을 포함한 정책 전달체계 전반을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4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실집행액의 정확한 기재 필요로서 지적사항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행안부 결산자료에는 167억 원을 실집행하고 27억 원을 불용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행안부의 국고보조금 미수납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의 미수납액은 약 110억 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실집행액은 해당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이며 결산서 제출 이후에는 정부 제출 공개 자료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므로 행안부는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실집행액 정보 기재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할 것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마지막으로 15번, 다년도 사업 종료 시 국비지원 및 집행 잔액 관리 개선 필요로서 지적사항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실집행을 부진 등을 이유로 2025년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사업 일몰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을 2026년도 신규 대체채용을 허용하고 그에 지원소요가 사업 종료 이후 연도까지 이어지도록 한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은 행안부는 향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같은 다년도 사업 종료 시 단계적인 일몰계획을 예산 당국과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 종료 이후 추가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는 채용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동 사업의 이월액과 잔여 지원금을 최종 종료 시점까지 철저히 정산·관리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정부 측 의견 주세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9번 안전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10번 안전도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11번 안전의 경우 주의 의견을 주셨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번 안전은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13번 안전도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14번 안전은 주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15번 안전까지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서명옥 위원 실장님, 연번 11번 보시면 소비쿠폰 사업을 하실 때 기존에 쓰고 있던 정보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될 건데 굳이 또 따로 구축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기존 서버를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민간 클라우드를 저희가 활용해서 예산에 전용하고 불용이……

○서명옥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굳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업과 시행을 하실 때에는 좀 더 고민을 해서 가지고 정말 예산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고민을 하시면 저는 이러한 상황이 안 벌어질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막상 집행을 하다 보니까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을 했고 실제로도 예산이 많이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서명옥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데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게 뭘 사업을 한다 하면 무조건 딱 잡는 게 뭘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구축비, 출장비, 여비 딱딱딱 기본적으로 잡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시스템 구축비라는 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런데 막상 시스템을 구축하려니까 거쳐야 될 절차가 엄청 많아요. 내가 원하는 시일 내에 시스템 구축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클라우드 이용하자는 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비를 잡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21년도에도 매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다가 폐기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의 전용·불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있는데 이걸 맞나요?

○**행정안전부지역디지털협력과장 채영주**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협력과장입니다.

20년도에 시스템 구축하였고 다른 시스템으로 재활용하였고요. 21년도에도 시스템 구축했고 그것도 다른 시스템으로 재활용하여서 소비쿠폰 당시에는 시스템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도 소비쿠폰 사업이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전에 시스템 구축해 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완을 하든지 호환을 해서 하시면 될 건데 매년 그때마다 시스템 구축한다고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지요.

○**진종오 위원** 추경안 제출 늦은 이유가 뭐예요? 이미 6월 19일 날 보안검증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국회 제출은 6월 23일인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지역디지털협력과장 채영주** 6월 19일에 국무회의에 추경안이 올라와서 국무회의 의결한 날이었습니니다, 6월 19일이요.

○**진종오 위원** 의결한 건 알겠고요. 그런데 왜 23일 날 제출했나라는 거예요, 국회에 제출한 게.

○**행정안전부지역디지털협력과장 채영주** 국무회의 의결부터 국회 제출까지 절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면 추경 심사과정 중에서 이미 클라우드 방식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검토하신 것은 맞으세요? 민간 클라우드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검토한 적은 있는지?

○**행정안전부지역디지털협력과장 채영주** 국회 제출된 이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추경 심사과정 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검증했을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지역디지털협력과장 채영주** 예, 맞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왜 뒤늦게 얘기하셨는지?

○**행정안전부지역디지털협력과장 채영주** 제출한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국무회의에 올린 당시에는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서 올린 거고요. 심사하는 동안 예산낭비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민간 클라우드로, 의결은 그렇게 시스템 구축으로……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한 적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지역디지털협력과장 채영주** 예.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하시겠다고요? 주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서명옥 위원** 그렇지요, 저도 동감입니다.

○**진종오 위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데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까라는 제도개선은 아니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과거에 이것에 대해서 서버를 구축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서버 구축을 해서 예산안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 이제는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예산……

○서명옥 위원 실장님, 자꾸 같은 소리 반복하지 마시고요.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서명옥 위원 자꾸 예산을 줄였다고 강조하는데 줄인 게 아니라니까요.

○진종오 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기조실장님, 연번 13번을 보면 미신청 사유 중에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신청 방법·절차가 복잡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과문해서 여쭙보는 건데, 이게 정부가 자체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신청 방법이나 절차가 좀 간이해질 수 있는 부분은 있나요? 어떻나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거와는 관계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관계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렇군요.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것 말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제 입장이 아니라 서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하는 얘기인데 소비쿠폰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서울은 75고 그 외 지역이 90이라서 서울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이거 차이를 좀 줄인다고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어떤가요?

○서명옥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심지어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다 자치구마다 사정이 달라요. 그래서 소비쿠폰에 대한, 서울이 75%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심지어 이 소비쿠폰을 주기 위해서 그 자치단체의 재난비용까지 끌어다 쓰는 예가 있다고요. 맞지요, 위원장님? 서울이라고 다 재정여건 좋은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주민 옆에서 말씀을 좀……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과거에도 계속 이렇게 이런 보조비율로 해와서, 그러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늘 사실은 이렇게 컴플레인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서명옥 위원 실장님 상황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서울이 재정 상황이 좋은 만큼 나가야 될 돈, 대상자, 인구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재정지출이 엄청 많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서명옥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래서 저는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과 지원대상 규모 등 실제 사업수요분을 반영해서 국고보조율 차등화라는 부분 안에 서울에 대한 고민도 좀 담기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서명옥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제가 은평구인데 은평구 힘들어하더라고요.

○진종오 위원 서울만 예외로 두시는 겁니까?

○서명옥 위원 아니, 아니요. 다, 전체.

○소위원장 박주민 전체 하는데, 전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규모, 재정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것을 제도개선 요구사항인데 서울에 대한 고민도 담아 달라는 말씀……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 소관 기타사항 간단히 2건 있습니다. 그것 마저 보고를 드리고 전문위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아니, 11번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 정부에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면 어떻냐는데 제가 보니까 제도개선보다는 주의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셨고 현장에서도 주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진중오 위원 위원님들 결정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주의로 그냥……

○서명옥 위원 주의를 한 번 덜 해야 다음부터 이렇게 관례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예산 책정은 안 할 거 같아요.

○소위원장 박주민 그런데 제가 약간 고민이 되는 것은 이번 사안은 주의를 하는 게 맞긴 맞을 수도 있는데 향후에도 그러면 무조건 민간 클라우드를 쓰는 게 정답일까? 사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뭔가 고민하시라라는 의미로 제도개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게 좀 고민은 됩니다.

주의로?

○진중오 위원 예.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주의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 말씀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과거사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전문위원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기타사항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기타사항 2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사건 이관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부실수사를 방지하며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다른 하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장애인 적극 채용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2025년 결산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라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과거사 부분은 전문위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승기 17페이지 이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시정요구사항 6건은 황승기 전문위원이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용혜인 의원께서 임시유해 안치시설 인건비 확충 및 단일 위령시설 조속 건립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단 박스를 보시면 당초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은 24년에 완료 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이 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시유해 안치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임시유해 안치시설의 공휴일 및 휴일 근무자가 없어 유가족 및 추모객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진주에서 발굴한 유해와 2015년 대전에서 발견한 유해 등 일부 유해는 지금 임시 안치시설에 안치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유가족 및 추모객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임시유해 안치시설의 근무자를 증원하고 개관시간을 확대하고 관람안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제도·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고 한국전쟁 전후 전국 단위 위령시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 인프라가 투입되는 한편, 건립·운영 과정에서 유가족 등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김영배 의원께서 제주4·3공원 사업 활성화 필요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주4·3공원 활성화 사업은 4·3평화공원 부지 내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4·3트라우마치유센터와 국제평화문화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25년 터파기 공사 중 암반층이 출현되고 연약지반 보강이 필요해서 공사가 지연되었고 9월에는 건축 시공사 공동수급체의 법정회생절차 개시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현재 업체 선정에서 적격심사 기준의 보완 가능성에 대한 점검 노력을 병행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용혜인·정춘생 의원님께서 제주4·3피해 보상금의 적기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피해보상금 예산 2418억 7700만 원 중에서 418억 2900만 원이 이전용되었고 실제 집행액은 1945억 8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4년 연속 100억 이상 예산이 타 사업으로 이전용되었는데 주로 재해복구비 및 인건비 부족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특히 2025년의 경우에는 신임위원 위촉이 늦어지며 보상심위분과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해서 보상금 심의와 지급이 지연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주4·3보상금 예산을 연차별 지급계획에 부합하는 규모로 편성하고 실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심사·지급절차를 개선하고 사실조사 심의 인력을 확충해서 계획된 지급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박상웅·용혜인 의원님께서 5·18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편성액은 170억 9000만 원입니다. 이중 실제 지급액은 74억 2000만 원입니다.

아래의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5·18민주화운동 보상금 예산을 과거 보상금 심사와 지

급실적과 일정을 반영해서 집행 가능한 규모로 편성하고 사실조사와 심의 인력을 확충해서 계획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김영배·박상웅·이광희 의원님께서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당초 기록물 보존센터로 활용하려고 했던 옛 국군광주병원 건물이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아 건물 전체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신규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25년 예정된 사업이 28년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392억 원에서 419억 1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철저한 예비조사를 진행해서 예기치 못한 계획 변경과 시설사업 진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용혜인 의원께서 여순사건위원회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사건처리의 필요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피해자 손실보상금 예산은 1억 3600만 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2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26년 8월 10일 기준으로 사건처리율은 59%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순사건위원회 조사관 인력 증원 노력과 함께 위원회 임기 연장 및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 협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16번부터 20번 안건까지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21번 여순사건위원회 손실보상금 지급 확대 및 사건처리 필요 안건의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을 유가족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기타 여순사건위원회 임기 내 사건처리 완료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해서 사건처리 관련 의견은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정부 측 의견 기반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여순사건 관련해서 의료지원금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서 신중하겠습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법률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른 유사 사건들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지금 전남도 조례를 통해서 유가족에 대해서도 10만 원 상당의 생활지원금이 매월 지급되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제주 4·3이나 여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주에서도 지금 조례로 유가족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에 담는 부분

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 이 관련된 개정안이 상임위에 제출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없어요?

○전문위원 황승기 예.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소위원장 박주민 없는데 용혜인 위원님은 왜 법률개정 협력하라고 하신 거지? 이후 계획이 있으신 건가?

○이상식 위원 저 좀……

○소위원장 박주민 예.

○이상식 위원 행안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여기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과거사……

○이상식 위원 제주 4·3, 5·18 그다음에 여순 사건, 전부 다 국내 사건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과거사가 일본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장생탄광…… 들어 보셨지요, 조세이탄광? 작년에 유골도 발견됐고……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상식 위원 또 우키시마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우키시마. 일본에서 1945년 8월 24일 날 우리나라 조선인 몇천 명, 8000명 태우고 오다가 교토 저쪽 해안에서 침몰된 사건인데 제가 그런 것 하다 보니까…… 현지에도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일본 바닷가에 가서 위령제도 지내고 하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세이탄광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여비 조금 지원됐어요. 여비야 한 몇천만 원 정도밖에……

내년 예산에도 해외, 그러니까 일본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아예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조세이탄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포함이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예민하고 또 외무부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뭔가……

이게 지금 한국하고 일본의 시민사회 이런 데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국가가 나서야 될 일인데 일본이라는 워낙 대일관계에 예민한 이슈가 있어 가지고, 그것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민간에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되고 경비지원 같은 것을 저분들이 바라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예산편성 과정…… 정부안은 넘어갔지만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도 신경을 쓸 테니까 행안부에서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다른 질의 사항은 없으신가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용혜인 의원실 쪽하고 소통하고 있거든요. 이게 법률안도 발의가 안 되어 있는데 협력하라고 되어 있어서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빠지면 남은 내용은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한 2분만 기다려 주시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과거사 문제하고 관련해서 혹시 경남 의령군 공류면 우 순경 총기난사 사건이라고 기억하십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박상웅 위원 그때 너무나 많은 지역 주민들이 희생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부가 위로 차원에서 아마 금일봉을 주고 무마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성격이 경찰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느냐, 국가가 임명한 경찰이었으니까 무기도 휴대할 수 있었고 그러면 국가 책임이나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아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안부 입장에서는, 경찰이 요즘 아주 비리도 많고 무능도 있고 한데 그것을 떠나서 정부가 임명한 경찰이니까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민간인들을 대규모 사살을 해서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는데 억울하게 난데없이 희생당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추모와 보상 이런 것들이 우 순경 사건에서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오래된 이야기라?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우 순경 사건 내용은 제가 대략적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제 의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해 볼 사안이라는 생각입니다.

○박상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기조실장님, 한 5~10분만 좀 기다리고 계시고 재난안전관리본부 먼저 하고…… 지금 용혜인 의원실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 정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김광용 재난안전본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재난본부장입니다.

항상 업무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주신 의견들 업무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세현 재난안전관리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건입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하천변에 인접한 하상도로에 출입차단기와 경보시설 등을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구축 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집중호우가 나타나는 7~8월 이전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사업개소 수는 전체 대비 약 27%에 불과합니다. 동 사업이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점, 단년도 사업으로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3~5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내에 구축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광희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자동차단시설 시스템을 상반기 내로 구축하여 인명피해 예방이라는 사업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질의해 주시지요.

○서명옥 위원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여름 장마철 이전에 구축이 끝나야 되는데 그 전에, 5~6월 달에 구축한 게 27% 밖에 안 되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올해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거의 90% 이상이 끝났고요.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안 된 것은 지방에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들이……

○서명옥 위원 이것은 국비 매칭 펀드사업인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방에다가 빨리빨리 내려 주면서 이 시기를 맞추라고 강조해 주셔야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25년도에는 좀 늦었고 26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시간을 좀 더 끌어 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다시 김주이 기조실장님 들어오시면 행안부 아까 그 내용 정리하고 행안부 소관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자료 25페이지 여순 사건 관련된 연번 21번에 대해서 법률개정이 아니라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소위원장 박주민 그래서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확대방안 마련에 협력할 것’ 이러면 괜찮겠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 수용을 다 하시는 것으로, 문구를 이렇게 바꿔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안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소위가 논의한 시정요구를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경찰청 소관 사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성 대행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항상 저희 경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경찰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잘된 부분은 더욱 보완·발전시키고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고생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경찰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지 봐 주시면 세입 일반회계 1건, 세출 일반회계 12건, 세출 특별회계 1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1건 철회되어 세입 일반회계 1건, 세출 일반회계 11건, 세출 특별회계 1건, 총 1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입 1건과 세출 1번부터 2번, 총 3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1건입니다.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관련해서는 연례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매년 50% 내외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체납 문제도 심각합니다. 과태료 미수납 증가는

세입 손실로 이어지며 제재금 부과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김영배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경찰청은 과태료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체납 발생 원인 및 장기체납 누적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 개선입니다.

세출 1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기동순찰대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 2월 신설된 조직입니다. 현재 명칭은 광역예방순찰대입니다.

광역예방순찰대는 2024년 2668명 규모로 신설되었으나 2026년에는 1051명으로 출범 당시보다 60.6% 감소했습니다. 이는 조직 신설 당시 인력 수요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조직 규모 축소 과정에서 기존 인력뿐만 아니라 관련 장비의 활용에도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광역예방순찰대용으로 구매한 순찰차 330대 중 약 100대가 다른 조직으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박상웅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경찰청은 조직 신설 이후 투입된 인력·차량·장비 및 관련 예산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규모 조직 신설·개편 시 중장기 치안 수요와 인력·재정 소요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페이지 2번 사항입니다.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 사업입니다. 그중 바디캠 도입 사업 내용입니다.

경찰청은 당초 비통신형 바디캠 도입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 확정 후 불과 이삼 개월 만에 통신형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세출예산 전액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했습니다. 사업방식뿐만 아니라 중장기 재정 부담 구조도 변경되었다는 지적이 박상웅·이광희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경찰청은 사업방식 변경 경위와 방식별 총비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신규장비 도입 시 예산편성 전에 사업방식의 적정성 및 중장기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 가지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주의를 어느 위원님이 하셨어요?

○전문위원 김세현 주의를 박상웅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제도개선은 이광희……

○전문위원 김세현 예, 이광희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와 제도개선에 대한……

○소위원장 박주민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할 텐데요.

○전문위원 김세현 유형 구분 관련해서는 1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 2번까지만 먼저 보고를 해 주신 거지요?

○전문위원 김세현 예, 2번까지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 대행님, 왜 통신형 방식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처음에 설계할 때는 비통신형으로 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하니까 통신형이 보안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료 전송·저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방식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통신형 같은 경우 월 구독방식의 통신형 단말기 도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기계를 완전히 소유하는 게 아니라 매달 얼마씩 내다가 최종적인 기간이 끝나면 기계 소유권도 넘어오는 방식인 거예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기계를 맨 처음에 1만 4000대를 받아서—이게 5개년 사업인데요—첫해에 1만 4000대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통신비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연한이 있어서 그 정도 사용을 하면 또 바꿔 줘야 되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소위원장 박주민 구독방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소유권은 KT컨소시엄에서 가지고 있고요.

○소위원장 박주민 계속 가지고 있고?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저희는 월 구독료를 이용해서 5년 동안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5년 끝나면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고?

○경찰청차장 유재성 다시 또 다른 계약을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비통신형 바디캠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통신형은 제가 보기에 구독방식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비통신형으로 해도 내용연한이 사오 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주민 사오 년 정도밖에 안 됩니까?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예, 마찬가지로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서명옥 위원 대행님, 연번 1번에 보시면 과태료의 징수율이 매년 갈수록 낮아지거든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징수율이요?

○서명옥 위원 예, 과태료 징수율이. 그렇지요?

이거 사실 개인당 금액을 보면 큰돈도 아닌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과태료는 이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과태료는 부과를 하면 첫해에 90%가 징수되고 5년 내에는 95%가 징수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가 97년부터 계속 쌓여 왔던 겁니다.

○서명옥 위원 누적되었다 이거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이게 결손 처리가 안 되고 쌓여 왔다 보니까, 분모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97년부터 이게 쌓여 왔던……

○서명옥 위원 그러면 3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을……

○이상식 위원 통계 방식을 바꾸든지 해야지.

○서명옥 위원 중간에 한번 털어 내야 되지 않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래서 지금 결손 처리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결손 처리를 하고는 있는데 결손 처리를 무작정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누적된 과태료가 분모가 많다 보니까……

○서명옥 위원 그러네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1년에 한 1조 2000억 정도가 되는데 첫해에 90% 징수가 되고 그다음 해에 한 1~2%씩 해서……

○서명옥 위원 오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5년 내에 95%가 다 징수가 됩니다.

○서명옥 위원 속도 위반으로 3만 원, 4만 원 날아오면 저는 바로 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높다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런데 법인의 차량들이 대포차로 이용되다가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5% 정도가……

○서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대행님. 이것을 계속 가져가면 행정 낭비거든요. 그러면 청장님의 직권이라든지 아니면 장관님하고 협의해서 가지고 직권으로 이것을 중간에 한번 정산을 하시고 새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 결손 처리를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과태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과태료 전문 징수 인력을 더 뽑아서 국세청에서도 국가 전체의 과태료 징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징수도 많이 늘어날 테고.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손 처리를 정확히 해서 분모를 털어 내는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것을 한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래야 후배 경찰관이 좀 편하지 않겠어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저도 하나만……

○소위원장 박주민 예.

○진종오 위원 직무대행님, 이것은 실제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총포·도검·화약류 관련해서 등록면허세가 있고, 그다음에 그 등록면허세가 보통 지로로 발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유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소유주한테 지로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생활질서계 담당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의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로가 계속 날라 와요. 그러면 결국은 실소유자한테는 지로가 안 가고 명의를 바꾼 사람한테 가다 보니까 과태료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더 없으시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출의 연번 2번, 그러니까 페이지로 4페이지의 경우에 박상웅 위원님은 주의를, 이광희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주셨는데 방금 제가 질문을 드려 보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중간에라도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뀌어야 되고 또 나름 잘 바꾸신 것 같은데 주의를 주기보다는 제도개선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서명옥 위원 저도 제도개선.

되니까, 박상웅 위원님?

○이상식 위원 박상웅 위원님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박상웅 위원 제가 이것 판단이 안 돌아가서 생각하려면 한 두 시간 걸릴 것 같은데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이것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광희 위원 경찰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방패, 테이저건 이런 거를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새로운 게 계속 나와서 범죄는 더……

○서명옥 위원 발달되고……

○이광희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왕왕 생기더라고요.

○박상웅 위원 제도개선으로 하세요.

○소위원장 박주민 제가 듣기로도 경찰 치안장비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달돼 있고 그래서 산업이, 계속 새로운 모델들이 소방에 비해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요.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세현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부터 8번까지 6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이버수사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그중 사이버·포렌식 수사지원활동 사업 관련입니다.

본예산 115억 6300만 원에 추경 7억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6억 1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이광희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소요액과 예상 계약금액 등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경찰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과거 계약 실적과 조달가격, 예상 낙찰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하고 추경 증액 후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 정보화 사업입니다. 그중 규모가 큰 사이버·포렌식 수사지원활동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영배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5년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가 36만 1577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성과목표를 15만 5253건으로 설정한 것은 실제 범죄 발생 규모에 비해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것으로

로 볼 수 있으며 사이버범죄 검거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를 보다 적절하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김영배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발생 추이 및 검거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이버수사역량강화 사업의 성과목표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 경찰인재개발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2025년 교육인원을 1만 4895명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수료인원은 9948명에 그쳤습니다. 교육인원 감소에 따라 직무교육과정 급식비도 예산 대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수요와 실제 수료인원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반복적인 과다편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광희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경찰청은 경찰인재개발원의 직무교육 수요와 실제 수료인원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급식비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찰기동력강화 사업입니다.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등의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5년 예산현액 890억 8900만 원 중 570억 39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지적사항은 납기 지연 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와 신규 발주를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라 차량 발주가 지연되고 대규모 이월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박상웅·진종오 위원으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차량별 교체주기와 납품기간을 고려하여 발주를 조기에 추진하고 특정 업체의 납기 지연이나 법적 분쟁이 전체 차량 도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약 및 사업관리를 개선할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피복관리 사업입니다.

경찰청은 신형 방탄복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경찰관 희망품목비에서 51억 8000만 원을 조정하여 사용했습니다. 박상웅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방탄복은 경찰관의 안전과 대응력 확보에 필수적인 보호장비임에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방탄복의 교체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타 사업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한 것은 체계적인 장비관리 측면에서 미흡하며 또한 25년 10월에야 신형 방탄복 구매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웠으며 26년 5월 현재까지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노후 방탄복의 신속한 교체라는 사업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탄복 교체 예산 미편성 사유 및 희망품목비 조정 경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보호장비별 내구연한 및 노후도를 반영한 중장기 교체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자료에는 주의로 표기되어 있으나 당초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제안하신 위원께서 변경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이런 건 주의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세현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장비유지관리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전자충격기 구매를 위해 56억 1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계약 방식 변경 및 발주 지연 등으로 해당 사업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경찰청은 국산 제품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경쟁입찰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로 인해 발주 및 계약이 지연되어 당초 연내 조달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예산 전액을 이월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고를 보시면 용혜인·박상웅 위원께서 주의를, 이광희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시정요구유형으로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찰청은 향후 장비 도입 과정에서 계약 방식을 변경할 경우 관리 부실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과 예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로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중오 위원님께서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소위원장 박주민 질의해 주십시오.

대행님,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총기가 허용되어 있지 않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범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방탄복을……

○진중오 위원 언제 사용하는지.

○경찰청차장 유재성 이 방탄복은 평상시에 착용하지는 않고요. 차에 이렇게, 순찰차에 싣고 있다가 그 싣고 유형에 따라서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든지 칼을 휴대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착용을 하는데 이 신형 방탄복으로 교체하게 된 거는 그때 인천 연수인가 사제총기 사건이 있어서, 구형은 목 이런 데가 또 보호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의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목 이런 데까지 다 보호되는 신형 방탄복으로 그때 교체하면서 우리 계획하고 좀 다르게 집행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죄송한데 방탄복이 방검의 역할도 합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방탄복은 다 연동이……

○진중오 위원 그러면 방탄복이 지구대별로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지구대별로. 지구대에도 여분이 있고 순찰차에도 이렇게 2개씩 싣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잠깐만요. 여기 사업에 보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탄복 교체도 그렇고 차량 교체도 그렇고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 경찰서마다 경찰차량이 다 배치돼 있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서명옥 위원 그 차량 구입은 중앙에서 일괄로 구입해서 배차합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일괄 구입해서 이렇게 그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서명옥 위원 그 차량의 노후화 정도, 매년 소요 연도 관리도 중앙에서 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다 관리합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차량을 교체하고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데 시기를 놓쳐 가지고 이렇게 예산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 저는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런데 그게 사정이 있습니다. 차량은 저희가 이제 차를 그냥 사서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사서 거기에 있는 특수장비들을 이렇게 그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수장비를 장착하는 회사가 몇 개가 이렇게 안……

○서명옥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그게 아니고 차량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경찰차 기본 승용차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차마다 조금 다른데 한 승용차……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순찰차 4년에 12만km입니다.

○서명옥 위원 4년에 12만km이잖아요. 그러면 4년에 12만km이면 차를 구입하고 난 뒤에 내구연한이 도래된 차는 어디어디에 배차된 어느 차 몇 대라고 다 알지 않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서명옥 위원 그게 안다면, 관리가 잘된다면 노후 차량을 갖다가 넘기고 제대로 신차하고 이게 교체가 제대로 안 된다는 문제는 안 생길 것 같고요. 아까 방탄복에도 보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시기를 놓치고 이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서 행정업무가 바빠져서 그런지 행정관리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바로 구매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약만 하면 차를 구매해서 거기에 새로운 장비들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차에다가. 그러면 그 차도 사야 되고 새로운 장비도 또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들하고 계약하면서 업체들 간의 분쟁이 있어 가지고, 이 해에는 유독 그런 분쟁이 해결되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금년부터는 좀 빨리 이렇게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제가 예산 집행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차를 구입을 하면 구입해 가지고 운행하는 시점부터 이게 내구연한이 카운트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지난 게 얼마가 있는지 그런 거는 다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런 게 제때제때 안 돼 가지고 한꺼번에 폐차시키고 한꺼번에 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리하고 이런 방탄복이라든지 주요한 장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관리하는 행정 담당자가 저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대행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이광희 위원** 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행정직이 총 2000명인데 부족한 7000명을 경찰이 지금 와서 하고 있고 7000명 중에 4000명이 총무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계속 바뀌어.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안 발생하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반직을 전문화하는 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광희 위원** 이게 지금 3년째 백날 똑같은 건 가지고 이거 하려니까 이게 좀 약간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토론회도 한 번 했었잖아요. 이거 일반적으로 최첨단 교체해야 됩니다. 경찰하려고 들어와 가지고 총무하고 이거 개선하고 또 바뀌고 이게 저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일반직을 지속적으로……

○**서명옥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고치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고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가 됩니다. 이 부분을 보실 거는 경찰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밑에 중앙 간부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위에 CEO, 리더가, 보스가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을 지속적으로 확대,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보다 더 이렇게……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단니까요. 자꾸 당장 눈에 보이는 몇몇 교체하는 거 이렇게가 아니라 경찰은 그냥 경찰로 쓰세요. 경찰인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직들 자꾸 직급 상승시키고 원래대로 하세요. 여기 계속 직급 상승 안 시키고 저기에 있는 사람 갖다가 그 직급에 맞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제일 일반직이 적다고 하는데 11%고 우리나라가 4%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래대로 해야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서명옥 위원** 저도 정말 참 놀랐던 게 정말 쉽고 단순한 일인데 그걸 카운트 못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반복되면은요 전문직종이라는 게 왜 따로 있습니까? 경찰은 경찰 전문직종에, 현장에서 뛰셔야 되고요. 사무행정직은 행정 부분에서 앉아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면 서로 이렇게 행정력 낭비가 없지 않을까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지금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사안이 이렇게 있어서 가지고……

○**경찰청차장 유재성**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대행님이 지금 두 번 정도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알겠습니다’라고 하셨고 회의록에 그렇게 기재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국감 때나 이거 계속 피랍혀 드릴 테니까 계획이라도 국감 때까지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충원하겠다, 이렇게 진급시키겠다, 이렇게 전문화 시키겠다 이렇게요.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계획이라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확실하게 기록해 두세요.

○**서명옥 위원** 계획서 가지고요 이재명 대통령, 각하까지 찾아가세요. 자꾸 들이미세요, 자꾸 들이미시라고요. 그래야 뭐가 바뀌지.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전문위원님, 연번 8번 전자충격기 관련해서요 경쟁입찰이었다가 협상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바뀌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이것도 사정이 있는데 우리 담당 국장이 좀 설명을, 전자충격기 부분은 담당 국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미래치안정책국장입니다.

전자충격기 관련해서는 먼저 24년도 9월에 행안위 결산소위가 열렸을 때 위성곤 위원장님께서 그때 경찰에 한국형 전자충격기 도입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국내 업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장되는 것이 아쉽다라고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 업체에 성능 개발 여부를 계속 확인하던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요. 여기가 23년도에 경찰에 충기를, 전자충격기를 납품을 했다가 그게 성능 미달로 불발이 돼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경찰에 대해서 저희 충기불발 관련해서 소송 제기를 했고요. 그게 작년도 6월까지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성능 향상 여부를 타진을 해 봤지만 답변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당시에 행안위원장실에서도 1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경찰청에서 기다려보고 계약을 진행을 하더라도 전자충격기가, 테이저가 지금 쓰이고 있는데 한국형 전자충격기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면서 기다려 봐 달라고 하였고, 조달청에서도 그렇게 해서 절차가 중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서야 비로소 1심 경찰청이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절차가 개시가 되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타깝게도 절차 지연이 되고 예산이 이월이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럼 경찰청 문제가 아니라 행안위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진종오 위원 그렇게 들리는데……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아닙니다. 절차 진행상에 중간에 변수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진종오 위원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의견을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게 치안과 안보 관련한 제품인데, 제품이라기보다도 도구인데 그거를 당연히 경쟁입찰에서 결국은 어떤 제품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 경찰이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그래서 승소 이후에 그 업체,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 업체에서 다시 입찰에 우리가 들어오겠다고 해 가지고, 그때 애초에 적격심사제로 되어 있는 그거는 주로 예산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테이저사와 한국형 전자충격기 2개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지체가 됐습니다.

○진종오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쭙봤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지금 현재 구입한, 지금 구입은 된 거잖아요. 58억 원어치.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이거는 그러면 그 회사 거 산 거예요, 국내 회사 것?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예, 테이저를 최종……

○소위원장 박주민 테이저 거를 샀어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예, 외부의 전문가들과 경찰직원들 간의 심사를 거쳐서 성능이 테이저가 좋다고 해서 테이저가 됐습니다.

○진종오 위원 잘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소송은 그러면 1심 끝났고 지금 항소심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예, 올 7월에 저희가 항소심 2심도 승소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7월에 항소심도 끝났어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그래서 업체에서 8월에 또 상고심을 제기를 한 상황이고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이거를 그러면 지금 주의와 제도개선 2개를 얘기하셨는데……

○진종오 위원 주의도 아니고 제도개선도 아니고 억울한 상황이라고요.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제도개선 정도로 해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세현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9번부터 11번까지 보고드리고 특별회계 세출 그리고 부대의견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건이 철회되었는데 9번이 철회된 건입니다. 그래서 10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10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감찰·인권보호활동 사업입니다. 그 중 내부 마약검사키트 구매 사업 관련입니다.

무작위 마약검사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 및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검사키트 구매예산 상당액이 이월되었으며 2025년 감사에서 고위직 대상자 911명 중 18명이 동의하지 않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박상웅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검사 대상, 선정 방식, 절차, 검사 거부 시 처리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신규 사업은 법적·제도적 검토를 완료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연번 1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찰위로·복지기금 관련입니다.

동 기금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사기 진작과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해 조성된 재정 외 자금입니다. 현재 자금 규모는 약 95억 5600만 원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기금은 경찰청의 재정 외 자금으로서 국가기관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 기능하면서도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책임성·투명성·의회통제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재정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박상웅 위

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기금 설립 이후 재원별 조성 경위와 연도별 수입·지출·잔액 및 사업별 집행내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재정체계 내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계기관과 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당초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제안 위원께서 변경하셨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KOICA ODA 프로젝트형 사업 관련입니다.

경찰청은 KOICA의 ODA 프로젝트형 사업 등을 위탁받아 총 6개 사업을 수행했으며 KOICA로부터 누적 45억 600만 원을 송금받아 집행했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외교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된 후 외교부에서 KOICA에 출연금으로 교부되고 다시 이를 경찰청 명의의 별도 계좌로 사업비를 송금하면 경찰청 사업담당자가 직접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경찰청이 국가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사업 수행과 자금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비가 경찰청의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담당자에게 사업수행과 자금집행 권한이 함께 부여되고 경찰청 회계관계 직원의 점검 범위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부적정 집행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청 자체 회계시스템을 통해 이를 적시에 확인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박상웅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외교부 및 KOICA와 협의하여 경찰청이 직접 집행하는 ODA 사업비를 수입대체경비 등 세입·세출 내역에서 관리하는 방안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경찰청 회계관계 직원의 사전·사후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별도 계좌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출 특별회계 1건 있습니다.

진료업무운영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이 중 전문의의 해외 선진의료 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국외교육여비 관련입니다.

6년 연속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장기간 신청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업의 운영방식 및 존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전액 불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연수 지원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등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신청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박상웅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현재 제도는 불과 3개월간 500만 원 남짓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2년의 의무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국외교육여비가 6년 연속 전액 불용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금액, 의무복무기간 등 사업조건을 현실화하고 제도개선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 폐지 또는 예산 미편성을 포함하여 사업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1건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찰청 청년인턴 채용 관련입니다.

관련해서 지적은 강명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경찰청은 3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였으나 16명이 중도 퇴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950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도 퇴사 원인과 함께 실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근무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졌는지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대의견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청년인턴의 중도 퇴사 등에 따른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근무환경 개선, 업무경험 제공 등을 통해 청년인턴이 실제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전부 다 수용하고요. 다만 한 가지, KOICA 사업비 관련해서는 주의 말고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KOICA 지침에 따라서 집행이 됐는데 앞으로는 외교부, KOICA와 적극 협조를 해서 규정에 맞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다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서명옥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대행님, 연번 10번의 마약검사는 경찰 내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마약검사인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직원들 상대로 합니다.

○서명옥 위원 오케이.

그리고 세출 1번을 보시면 전문의에 대해서 해외 선진의료 연수를 해 주면서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하시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전문의.

○서명옥 위원 그런데 만약에 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해외에 다녀와서 의무복무기간 2년을 못 채울 때는 이 여행경비 토해 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경찰병원에서……

○경찰병원의료경영기획실장 남궁원철 여행경비……

○서명옥 위원 토해 내야 돼요?

○경찰병원의료경영기획실장 남궁원철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어 가지고……

○서명옥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전무하지요?

○경찰병원의료경영기획실장 남궁원철 저희가 실적이 전무한 게,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코로나 때 아무래도 해외 나가는 게 제한이 많았고 그때 저희가 전담병원을 하면서 거기에 집단 당직 체계를 하면서 못 나갔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전공의 집단 사직 때도 전문의가……

○서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경찰병원의료경영기획실장 남궁원철 그래서 못 나갔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저도 질문인데요. 연번 10번 관련해서 현재는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데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이 마약검사에 대해서?

○경찰청차장 유재성 마약검사가 법이 개정돼서 내년 27년 2월 28일부터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이전부터, 용산서의 경찰관 마약 투신 사건이 있어 가지고 먼저 법 개정 전이라도 총경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마약 단속하는 경찰관이라든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많아서 법 개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했는데 강제할 수 없었던 거지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서명옥 위원 18명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동의 안 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서명옥 위원 결국 안 받았어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박상웅 위원 안 받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의무가 아니니까 안 받겠다, 그런데 안 받는 이유가 단지 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받는 데?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이상식 위원 대행님, 그러면 법률이 어떤 법률입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경찰공무원법입니다.

○이상식 위원 경찰공무원법?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이상식 위원 그러면 경찰관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경찰청차장 유재성 지금 군인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식 위원 군인들이 의무적으로 마약검사를 합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공무원에 의무화됐기 때문에, 다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 공무원을 한번에 다 매년 할 수는 없는 거고 선별적으로 해서 몇 프로 정도……

○이상식 위원 마약 다루는 직렬이 관세청에도 있고 검찰도 이번에 중수청 하면서 마약 업무를 자기들이 달라고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다른 데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군인들은 하고 있고요.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철도·항공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박상웅 위원 25년도 검사에서 고위직 대상자 911명 중 18명이 동의하지 않아서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18명 외에는 다 했다는 이야기인데 동의한 사람은 다 검사를 받았나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동의한 사람은 다 검사를 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18명만 배 짜라네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런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상웅 위원 명단 공개할 수 있어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것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박상웅 위원** 경찰 간부가 이런 일에 동의 안 하고……

○**이상식 위원** 윤리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의무화 안 됐어요.

○**박상웅 위원**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 90%가 다 용납이 되나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내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 대행님이 요청하신 게 연번 12번 KOICA 사업비 집행절차 관련해서 박상웅 위원님께서 주의로 시정요구 유형을 정하셨는데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주시면 충실히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박상웅 위원** 혹시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예산집행을 했다,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이것은 박상웅 위원님의 양해 하에 제도개선으로 변경하면 대행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 관련해서도 특별히 질의하시거나 이런 게 없고 대행님도 다 수용하신다는 거 잡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경찰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위가 논의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분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하시고 2시부터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박주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혁처 소관 사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차장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안녕하십니까? 평소 인사혁신처 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주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국가 예산 편성과 집행 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처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기 전문위원 황승기입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 일반회계 4건, 공무원연금기금 3건, 부대의견 1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영배·이광희 위원님께서 PSAT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인사혁신처는 PSAT를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개편하여 공공 부문 전반에 확대·공동 활용할 목적으로 이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예산으로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PSAT가 공공기관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시험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고 공공기관의 수요가 충분하고 이를 통해 구직자의 시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PSAT 활용 수요가 충분한지 알 수 없고 개별 기관의 별도 전형 유지가 불가피함에 따라 기관의 실질적인 채용비용 절감 효과는 미흡한 반면 다중 시험 준비로 인한 구직자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PSAT 공공 부문 확대에 앞서 실제 도입 수요와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수험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김영배·이광희 위원님께서 퇴직 또는 퇴직(예정) 공무원 지원사업의 유사·중복기능 조정과 중장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의 퇴직 전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퇴직 전 단계에서 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운영을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기금에서는 은퇴지원교육으로 40억 93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을 위해서 일반회계에 49억 8900만 원, 기금에 10억 61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 사업 간 일부 중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 지원사업의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고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퇴직지원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용혜인·이광희 위원님께서 인건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정확성을 개선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사혁신처 본부 인건비 부족액 재원이 19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재개발원 인건비에서 13억 1000만 원을 전용하고 수습행정관 등 인건비에서 6억 원을 내역변경 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정원 증가, 보수 인상을 상승, 육아

휴직 확대 등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편성 당시 실제 인건비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소속 기관 인건비를 본부 재원으로 전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회계연도 말에 집중되는 이·전용 및 내역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인건비를 실시간 실소요 기반으로 편성해서 부족 소요를 조기에 확인·조정하는 등 예산 편성에 있어서 방식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앞의 2건은 용혜인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거고요. 이광희 위원님께서서는 이 두 가지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관리를 강화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용혜인 위원께서 행정소송배상금 예산의 적정 계상과 반복적인 전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리복무국 소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 배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3회에 걸쳐 자체 전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충당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7년도 예산 편성 시 배상금을 적정 규모로 계상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인사혁신처는 지적해 주신 내용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7페이지 연번 3번에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시정요구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는 누가 하신 거고 제도개선은 누가 하신 거지요?

○전문위원 황승기 용혜인 위원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집행에 있어서 이·전용과 내역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셨고요. 인건비를 잘 편성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개선을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는 보통 시정요구 유형을 하나로 정리해 달라고 얘기하신 건데 지금 이 사안을 보니까 구분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주의를 하신 부분하고 제도개선을 한 부분하고. 그렇지요? 이런 경우도 무조건 하나로 정리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황승기 보통 1건에 대해서는 하나로 정리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진중오 위원 하나로 가시지요, 깔끔하게.

○소위원장 박주민 그럴까요?

그러면 연번 3번에 대해서는 인혁처에서는 이것을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으로 정리하면 좋은지를 의견을 주시지요, 아까는 다 수용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저희야 제도개선으로 주시면 훨씬 더 좋기는 한데요.

○소위원장 박주민 더 좋아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소위원장 박주민 일단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질의를 좀 하시지요, 위원님들.

제가 질의할까요?

인혁처 하고 있습니다.

아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 배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했다라고 연번 4번에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저희가 윤리복무국에서 소송이 걸리는 사건은 취업소, 취업 심사를 하고 있고요. 주식백지신탁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래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당연히 이기실 때도 있겠지만 질 때도 있기 때문에 배상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편성을 안 하고 하셨던 거예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그동안 사실은 이 소송이 걸렸을 때 저희가 패소한 사건이 21년에 한 번이 있었고요. 24년에 두 번, 그런데 작년에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식백지신탁 같은 경우는 거의 패소하는 일이 적고요. 취업 소송인 경우 일부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또,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소송에서 지더라도 바로 배상금액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원고가 다시 배상금 신청을 법원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최종 패소일과 지급 결정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사실 패소 사례도 적고 그래서 편성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소송 진행 중인 건들을 좀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위원님들 질문을 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연번 3번, 이게 지금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사실은 뒤에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각각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하나로 정리하면 좋겠다고 얘기하셔서……

어떻게, 의견들……

○**이상식 위원** 제도개선 하시지요, 제도개선.

○**소위원장 박주민** 제도개선?

○**이상식 위원** 예.

○**소위원장 박주민** 용혜인 위원님도 안 계시고 이광희 위원님도 안 계시지만……

제도개선으로 그러면 정리하는 것으로……

누가 물어보면 제가 이상식 위원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셨다고……

○**이상식 위원** 예.

○**소위원장 박주민** 이것은 제도개선을 정리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황승기** 기금에 대해서 3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또 있어요?

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황승기 연금기금 관련된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용혜인 의원께서 공무원연금기금 미수납액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25년도 연금기금의 미수납액 규모가 1646억 8200만 원으로 지난 5년의 연도별 수치에 대해서 월등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퇴직수당부담금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퇴직인원은 오히려 24년 대비 감소하여 퇴직수당부담금 증가의 원인을 퇴직자 증가에서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수당부담금 정상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또는 미준수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기금 미수납액 증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수납액 정산 구조를 개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 주택임대보증금 반환 규모의 예측에 있어서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금공단은 임대보증금 반환예산 부족을 예상하고 11월에 529억 73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지만 그중 20.4%에 해당하는 108억 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보증금 반환 소요를 정확히 추계하고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이광희 의원님께서 맞춤형복지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단계별 계획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맞춤형복지시스템은 2014년 구축 이후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시스템 안전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25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나 후속 구축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실제 재구축 사업에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맞춤형복지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구축 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재구축 전까지는 기존 시스템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보안 위험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지적해 주신 내용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진종오 위원 연번 7번 질의 드릴게요.

지금 장애가 있는데도 복구가 안 된다라는 거지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그러니까 이게 24년도에 구축되다 보니 노후화가 돼서 이것을 복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렇다면 이게 단계별로 어떻게 수정할 거라든지 일정 같은 경우는 국회 측에다가 전달·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일단 이……

○**진종오 위원** 그냥 제도개선이라는 말씀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2027년도 예산도 다시 또 요구가 될 거잖아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진종오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게 27년부터 29년까지 3개년 연속사업이고요. 일단 내년도에 다행히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예산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계획이나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예.

○**소위원장 박주민** 공무원연금기금 미수납액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서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관련 법령 미비 또는 미준수에 기인함으로 추정됨’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뭐예요?

잘 안 들리셨어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아닙니다. 제가 설명……

○**소위원장 박주민** 이게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추정됨’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고 정확한 원인이 뭐예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법령에 따라서 사실 퇴직수당부담금의 경우는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거여서요 이게 분기별로 그 부분을 지급하고 정산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법령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인원들이 정확히 추계가 되면 그만큼 다 받고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추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불일치가 발생했고요.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저희가 분기별 정산하게 되지만 그 증가 원인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런데 그렇다면 말씀 주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 관련 법령이 미비하거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걸 아닌 거네요? 그 규모, 퇴직자의 규모의 예측이 어려운 점 아닌가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사실은 법령에 따라 고지하고 수납하는 절차인데 그 부분에 약간의 이격이 발생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니까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서 이걸 아니냐?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서명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급하고 수납하는 규정을 좀 바꿔야 되겠네, 그렇지

요? 그래야 이게 중간에 붕 떠 가지고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공무원연금법에서는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한 규정들을 분기별로 정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도개선 사안에서 규정을 바꿔야 될 상황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서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이게 말씀 들어 보면 우선지급하고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서명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될 바꾸든지 뭔가 좀 규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서 추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맞춤형복지사업. 맞춤형복지사업 시행을 위한 시스템 말고 맞춤형복지사업 전체 공무원들한테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제가 계산은……

○**이상식 위원** 요새 일인당 대략 얼마 정도 합니까? 저도 이거 옛날에 사용해 봤거든요. 그때는 8만 원, 10만 원 이랬는데 요새는 얼마인지……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지금 국가와 지방이 차이가 있는데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예산처에서, 어차피 예산을 따는 건 마찬가지로인데……

○**이상식 위원** 그러면 가령 차장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돼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저 한 7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많네.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많은 게 아니고요.

○**이상식 위원** 그게 아니고 옛날에 비해서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본 점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또 재직년수에 따라서 일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상식 위원** 작아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많게는 200……

○**이상식 위원** 지방이 더 많다고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더 많습니다.

○**이상식 위원** 왜 그래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그것은 서로 주머니가 다르고요. 저희도 많이 올려 주시면 더 편성할 수가 있는데 재정 당국에서는 저희 쪽은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물론 맞춤형복지 예산으로 나가는 게 자녀출산이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또 조금씩 추가되는 게 있어서요. 그것은 건건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는 그 정도입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그때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신청하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돈이, 새로 하는 데 이렇게 몇십억, 70억씩 이렇게 드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그 시스템이 구축한 지가 오래돼 있다 보니 노후화됐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이가 먹으면 노후되듯이 이것도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상식 위원** 항상 시스템 구축하면 돈, 돈……

○**서명옥 위원** 제가 하나 여쭙볼게요.

이왕 이것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서명옥 위원** 그러면 복지포인트를 주면서 굳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내의 물건만 사라?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물건 사는 것은 카드사용액이, 맞춤형 복지가 카드사용액을 관련된 데는 다 사용될 수 있고요. 그걸 첨부하고 신청하면 그 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서명옥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설사 들어가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살 만한 게 없다고요, 살 만한 게…… 같은 전자제품이라도, 그렇지요?

○**이상식 위원** 차라리 유동성으로 지급하는 게 제일 좋은데……

○**서명옥 위원** 맞아요, 저도. 그게 낫지.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이렇게 딱 융통성 없이 맞춰 놓은, 내가 사고 싶지 않은 전자제품을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꼭 그건 아닌데……

아니,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은 항목들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어서 개인 여행이라든가 도서 구입……

○**이상식 위원** 초이스가 많다 이 말입니까?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이런 부분들에 다 쓸 수 있도록 용도가 굉장히 다변화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주실수록 저희는 좋은데요.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서명옥 위원** 아니, 많이 주더라도요. 그냥 받는 사람이 마음껏 자기 개인 사생활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풀어 줬으면 좋겠어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이왕 주고 생색내는 거 기분 좋게 드리라고.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최근에 제가 한국은행 쪽 얘기 들어 보니까 CBDC에 기반한 결제시스템을 만든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으로 줘도 한정적으로 딱 쓰게 만들 수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것도 나중에 되면 좋기는 좋겠네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승기** 부대의견 1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부대의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황승기** 이 부분은 경찰청·소방청하고 다 같이 제기된 부대의견입니다.

청년인턴의 채용 미달 및 중도 포기로 인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청년인턴이 실제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어떠십니까?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청년인턴제도는 저희 국가 인사방침과도 관련되는 정책 방침 이고요. 저희들이 충실하게, 중간에 직장 구해서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중도포기자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위원님들 추가적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식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위가 논의한 시정요구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혁처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선관위네요.

강동완 사무차장직무대리님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강동완입니다.

저희 선관위에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배정된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집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겸허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향후 예산 편성, 집행 등 우리 위원회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전문위원 황승기** 먼저 세입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용혜인 위원께서 과태료 수납률 급락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징수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태료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25년도 징수결정액은 2억 8600만 원이고, 그중 1억 1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25년도 수납률은 39.2%에 그치고 있어 22년도 이후 가장 저조한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제10항에 따라 일정 과태료는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기탁금 반환 이후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를 공제할 기회를 상실하고, 이후 자진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수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인 후보자에 대하여 예상 과태료 상당액의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을 일시 보류하거나 지급을 유예하는 방안 등 과태료 수납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광희·용혜인 위원님께서 국가선거비용 미반환액의 수납률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산상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불법후원금 국고귀속액 등에 대한 수납액으로 징수결정액 38억 5900만 원 중 수납액은 23억 9700만 원, 미수납액은 14억 62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은 최근 4년간 평균 12억 9700만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임의 체납된 국가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해서 징수 재위탁 등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통해 소멸시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납률 제고를 위해 정당별 미수납 상세내역과 체납잔액을 공개하는 등 행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세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일단은 이 세입 2건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세입 2건 모두 위원님들 지적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다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과태료 수납률 급락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는, 선거법 제261조는 지금 과태료를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비용보전금에서 공제하거나 또 과태료 절차 진행 중에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정치자금법 51조에 따른 과태료는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보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징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거법상 과태료도 정치자금법과 같이 선거비용보전금에서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나 부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보전을 유예하는 것은 후보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고 법적 예측가능성 등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입법화 없이 선관위 자체적인 대책에 따라 이행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크므로 신중 검토 후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국가선거비용 미반환액 수납률 제고 노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는 매년 1월과 7월 미반환액 징수 재위탁 그리고 소멸시효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있으며 또 납부가능 재산 발생 시에는 세무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6개월 전에 재판 청구를 통해서 소멸시효를 10년 더 연장시키는 사후관리 등 필요한 채권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관련 규정상 미반환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세무서에 징수 위탁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후의 체납 처분은 관할 세무서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미반환금은 당사자의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징수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현행 제도상 추가적인 징수 수단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3일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이 출범함에 따라서 현재까지 보전비용 미반환 86건에 대해 징수 위탁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세무서와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징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한편 채납자 정보 등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입법이 발의되어 있는 사안인데 미반환자 인적사항이나 미반환금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 등 관련 입법 논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참여·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의견은 주셨지만 수용은 하신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둘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기반해서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시지요.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연번 1번, 세입 1번에 대해서는 입법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가지고 용혜인 의원실하고 저희 의원실 정도에는 보고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의 차이점 같은 것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래서 아마 용혜인 위원님 같은 경우에 법안 발의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황승기 5페이지부터 세출예산 1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웅·진종오 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사업 소요에 대한 추계를 정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관위 소관 예산의 전체 불용액 282억 9700만 원 중 예비비가 배정된 10개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267억 9400만 원으로, 불용액 기준으로 전체 불용액의 94.7%에 해당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그 신청 규모가 과다할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재정통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고 긴급한 소요라는 요건과 더불어 그 금액 수준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청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 예비비의 비목별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예비비 요구 시 과거 공직선거 집행 실적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과다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국외출장 관리의 적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관위 위원장의 22년도 이후 국외출장은 3건으로 모두 배우자를 동반하여 실시되었고, 관련 경비도 국외출장 예산에서 집행되었습니다.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만으로 배우

자 동행의 필요성이 일률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출장결과보고서상 배우자에 대한 별도 초청이나 구체적인 공식 일정이 확인되지 않아 동행의 업무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위원장 국외출장 시 상대국 또는 방문기관의 별도 초청 여부, 공식 일정에서의 역할 및 동행 필요성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세부 출장 일정을 수립하는 한편 배우자의 동행 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출장결과보고서, 홈페이지 등에 명확히 기재하고 공개함으로써 배우자 동행의 필요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정춘생 위원님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외출장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관위 위원의 국외출장은 재외선거관리사업 예산으로 세 차례 실시되었으며 집행액은 1억 751만 원입니다. 위원 출장 중 2건은 임기만료 4개월 전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통상적으로 국외출장은 그 성과를 향후 기관 업무에 활용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임기만료를 앞둔 위원의 국외출장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의 국외출장은 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일정도 재외공관 관계자, 재외선거관리위원, 한인단체 면담 등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다수 위원이 단기간에 연이어 출장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였는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의 국외출장을 심사할 때 잔여 임기와 출장 성과의 기관 환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다수의 위원이 단기간에 유사한 목적으로 연이어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도록 출장 시기와 인원 등을 조정하는 등 국외출장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이광희·진종오 위원님께서 임차료 세목조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임차료는 대통령 궐위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소 및 개표소 시설 또는 관련 집기 및 회송차량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동 예산은 예비비 산정 단계에서는 임차료를 과소 산정하고 6주 뒤 세목조정을 통해서 12억 100만 원을 다시 반영한 후에 불용액은 8억 7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임차료로 집행된 투·개표소 시설 및 회송차량 확보 방식의 변화 추세를 선거경비 산출기준에 사전 반영하고 세목조정 시에도 잔여 선거일정 기준의 실집행 가능 규모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긴급 수의계약에 있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문제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계약 총 69건 중 ‘긴급한 행사 등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를 근거로 체결한 계약은 15건, 209억 7300만 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7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쉼위선거와 같이 준비기간이 짧은 경우에 기존 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선정될 경우 신속한 계약 이행에 유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반복될 경우 긴급 상황마다 기존 거래업체가 사실상 우선적인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선거물품·용역에 대해서는 대체 가능한 업체와 시장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복수 업체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술·규격상 진입요건을 점검하는 등 경쟁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수의계약 발생 시 특정 업체에 대한 장기적 의존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김영배·서명옥·이광희 위원님께서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기준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25년도 회계연도 중 이루어진 인쇄매수 산정기준 변경 절차의 적정성 및 투표용지 산정방식 검증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통상 지방선거 실시 전년도에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인쇄비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평가 자료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145억 1300만 원이나 집행액은 81억 39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핵심 물품의 예산 산출기준에 대하여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김영배·서명옥 위원님께서 시정을, 이광희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박상웅 위원님께서 대통령선거 용역비 급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통상 일반용역비는 행사 운영이나 영상자료 제작 등에 쓰이고 관리용역비는 청사 관리나 장비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에 쓰이는 용역비입니다.

21대 대통령선거 일반용역비는 20대 선거 94억에서 166억으로 증가하였고 관리용역비는 8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대 대통령선거와 21대 대통령선거의 용역별 계약 건수, 계약 방식, 계약 금액 및 주요 과업을 비교·분석하고 용역비가 급증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서명옥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이것 계속 다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소위원장 박주민 너무 양이 많지요?

○서명옥 위원 너무 많아요. 좀 잘라서 합시다.

○소위원장 박주민 여기까지 일단 하지요.

○이상식 위원 그래야 되겠네요.

○소위원장 박주민 여기까지 하고, 저도 듣다 보니까 이제 쫓아가기가 좀 어려워서. 전문위원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고 제가 회의 진행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황승기 예.

○소위원장 박주민 바로 그렇게 순순하게 인정을 해 주시면 제가……

여기까지 정부 의견을 먼저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의견을 한 건씩 드릴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드리면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범위까지만 의견을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알겠습니다.

5쪽 연번 3번, 예비비 집행 사업 소요 추계의 정밀화 필요와 관련해서 시정요구유형이 주의인데요, 저희들은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지적들은 겸허히 수용합니다만 권위선거로 인해서 예비비 편성 기간이 사실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비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과거 집행자료 또 선거일 정 등을 반영·검토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집행액을 고려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서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직무대리님, 잠깐만요. 의견을 수용하시는 것은 빼고 수용하지 않으시는 부분만 추려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이거는 그렇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다음, 7쪽에 있는 연번 4번입니다.

국외출장 관리의 적정성 제고인데요.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의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국외출장 시 공무수행을 위한 배우자 동행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담당 부서에서는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 그리고 관련 예산이 편성된 점, 타 헌법기관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우자 동행이 제한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날 노태악 전임 위원장께서 배우자 출장 동행에 소요된 비용 4700만 원을 전액 국고에 반환하였고요. 다른 헌법기관에서도 기관장 배우자 동행 출장이 있어 왔다는 점 그리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배우자 동행 출장과 관련해서 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에 있는 연번 5번입니다.

중앙선관위 위원 국외출장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주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위원 국외출장 계획 수립 시 심사 기준과 출장 시기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중앙위원들의 국외출장 성과 환류는 출장 후에 위원 회의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계시고 또 동행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전 직원 대상 출장 결과보고서를 공유하면서 큰 실익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년간의 임기 수행을 통해서 전문성을 축적한 상태에서 국외출장을 다녀오신 다음에 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도 효과가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6번은 저희들이 수용하고요.

연번 7번 같은 경우에는 긴급수의계약의 특정 업체 집중 완화 및 경쟁성 제고와 관련해서 시정요구가 시정인데 저희들은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통령 궐위선거가 60일 안에 실시해야 됨에 따라서 선거물품 제작 등을 위한 입찰공고 등 계약업무 처리, 제작·검수·납품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긴급입찰을 하더라도 입찰 준비나 공고, 협상 등에 42일 정도가 소요되고 또 물품의 제작·검수·납품에 30일 이상 소요되면 최소 72일이 소요되므로 6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치러지는 대통령 궐위선거에서는 경쟁입찰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여기까지 하지요, 지금 하나하나가 큰 것들이라서.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 좀 주시지요.

○이상식 위원 우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차장님께서—그러니까 9페이지 5번이지요—선거관리위원들이 임기를 거의 마치는 입장에서 외국을 갔다 오서 가지고 그분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위원 A 같은 경우에는 영국 선거위원회 또 룩셈부르크 선관위 이거는 외국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외국의 사례 같은 것을 학습할 수 있다고 처요. 그런데 위원 B 보면 캐나다 가서 토론토 총영사 이것 우리나라 사람 맞지요? 재외선관위원 이것도 선관위 파견 직원, 토론토 한인회장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 그다음에 미국 델러스에 가서 가지고 델러스 출장소장 이거는 우리나라 외교기관이지요? 재외선관위원은 또 거기 선관위 직원, 델러스 한인단체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 상파울루 가서도 똑같아요. 한국교육원, 브라질한인회, 상파울루 총영사, 재외선관위원.

이것 전부 다 100%, 하나도 외국 선거관리위원회나 무슨 국가기관 이런 방문이 없고 우리나라에서 파견 나간 외교관이나 선관위 직원을 만나고 또 한인회를 만나는데 거기에서…… 제가 일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외국의 선거관리 경험이나 노하우를 습득할 그런 공유할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차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잠시 답변드리면 지난해 출장 갔던 중앙위원들 같은 경우는 3건 다 재외선거 평가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작년에 대통령선거와 재외선거가 같이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외선거를 치른 것에 따라서 각 대륙별 국가의

국민들이라든지 공관 관계자분들을 만나면서 했는데 선거 종료 후에 저희들이…… 공관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이상식 위원 다 다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재외선거 여건이 미국 다르고 영국 다르고 남미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최소한의 소규모 인력으로 국가를 구분해서 출장반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면으로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도 재외선거 관리 평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식 위원 글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거관리위원들이 가서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 세 군데에 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니요, 없었습니다. 재외선거관이 없었습니다. 다 없는 나라입니다.

○이상식 위원 캐나다 있고 미국도 있고 재외선거관이 다 있는데,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캐나다도 이분들이 갔을 때 그 재외선거관들은 선거 마치고 다 귀국을 한 상태였고……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꼭 높은 분이 가서 출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만 습득될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경험이었느냐 이거지요, 저희들 생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국가 선거에서 재외선거가 도입된 지 14년째가 됐습니다, 2012년부터 재외선거가 도입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외선거를 마칠 때마다 평가를 해 보면 국가마다, 어떤 국가에서는 우편 투표 같은 것을 도입해 달라 이런 의견을 주시는 공관이 있는 반면에 추가 투표소, 그러니까 투표소 숫자만 조금 늘려 달라는 그런 의견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위원들이 갔을 때 저희들은 훨씬 효율적인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식 위원 차장님, 좀 더 근본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발생했던 선관위의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직원 부정채용 문제 같은 이런 게 선관위에 대한 외부통제까지 전혀 없고 선관위 자체로만 모든 의사결정을 하도록 놔두고 감사원 감사도 거부하고 막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외선거의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을 함양하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관위 중앙위원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외교기관이나, 우리나라 외교부나 다른 데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게 높은…… 중앙위원 이분들이 대법관 이런 분들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꼭 가서 가지고 의견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데만 신경 쓰지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제대로 값어치 있는 교훈을 저는 배우지는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게 또 역으로 최근에 선관위가 투표용지 문제같이 이런 걸로 특검까지 받게 된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굳이 여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려면 구석에 있는 거 찾아내면 되지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관위가 너무 과거의 선례를 답습하고 기관이기주의, 기관편의주의, 본인들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뼈저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

○서명옥 위원 저 질의할게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위원 A·B·C 있지요? 보면 일주일 정도 가셨는데 경비가 3300 맞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한 명 가신 거예요? 몇 명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닙니다. 4인 1조였습니다.

○서명옥 위원 4인 1조였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 가서 여러 가지 재외선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애로사항을 들으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위원님이 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임기만료를 임박해서 가셨어요.

○이상식 위원 보은성이지요.

○서명옥 위원 맞아요, 딱 보은성이라고요.

그러면 임기가 덜 오셔 가지고 오신 분한테 이런 기회를 드려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전부 다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는 정말 취지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큰 실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누구나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집단 같으면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임기를 4개월…… 임기 1년만 남아도 이런 공무출장 안 보내 줍니다. 그렇지요? 공무출장을 보낼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고요. 그런데 정말 국민들의 세금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맥락으로 연번 4번을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 동부인, 정말 우리는 이 뉴스 보고 식겁을 했습니다. 선관위의 위원장님은 공무를 가는 게 타당하지만 동부인, 그 배우자가 무슨 공무가 있습니까? 예우 차원에서 보냈다는데, 예우 차원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모든 공무원한테 잣대를 들이대야지요. 그리고 동부인 해 가지고 공익적으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무 감각 없이 시행하고 있는 선관위도 정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너무나 국민 여론하고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왜 그러신 줄 아세요? 관리·감시·감독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눈높이로 모든 일을 하고 그 결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동부인 하는 것은 1970년대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위원장이 출장을 가는데 동부인을 해?

그것도 비즈니스 타셨나요, 퍼스트 클래스 타셨나요? 뭐 타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비즈니스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비즈니스요? 부인도 비즈니스 탔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서명옥 위원 그건 아니지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것까지 징계 받습니다. 간부가 해외출장을 갔는데 비행기값은, 항공값은 부인이 댔어요. 그래서 방만, 방은 어차피 하나의 름을 쓰니까 거기에 부인을 재웠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징계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 방값을 부인이 안 냈잖아요. 편승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는데 어떻게 위원장님이 주어진 권한도 없이 동부인 하는 것을 용인했어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본인이 반환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에서 주의로 해 달라고요? 아직도 선관위는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전혀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반환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저는 이거는 시정 이상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채현일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헌법기관의 예를 들면서 배우자를 동행한다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현재하고 대법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채현일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현재하고 대법원입니다.

○채현일 위원 현재하고 대법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그냥 관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면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배우자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채현일 위원 그러면 배우자분은 일반 여권으로 나갔나요, 외교관 여권으로 나갔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다 일반 여권으로 나가십니다.

○채현일 위원 일반으로 나가지요? 그런데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외교관 여권으로 나가고—여권법상이요—그만큼 예우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가게 되면 선관위 같은 경우는 공식일정을 했나요? 공식일정으로 배우자 프로그램, 상대국 선관위원장의 배우자를 만난다거나 배우자 프로그램 참석한다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공관 만찬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관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아니, 공관 만찬 그거는 사적인 거고. 그리고 갔다 와서, 국회의장 배우자 같은 경우는 갔다 와서 모든 예산이나 쓴 것들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뭘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구해서……

○채현일 위원 그래서 시정이라고 한 거는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하다고 봐요.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 시정요구유형 부분을 봐도 시정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상복구 이미 하셨잖아요. 이거 사실은 원래 시정의 내용이 원상복구인데, 그리고 부당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정을 그냥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위원장님 그 말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 이것까지 하고.

제가 잠깐 이석을 해 봐야 되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소위원장대리 채현일님이

잠깐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해 주시고, 우리가 되시지 않으면 그러면 해 주세요. 20분 정도만 이석을 하고 오겠습니다.

(박주민 소위원장, 채현일 위원과 사회교대)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그러면 그거 받아들인 걸로 하고 일단 할까요?

○진종오 위원 추가 저도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예, 진종오 위원님.

○진종오 위원 배우자 같은 경우는 만찬 자리에만 참석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식일정은 아예 참석 안 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장비를 반납한다고 하셨잖아요. 반납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반납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반납했지요? 그런데 보통 그런 거를 그렇게 비용을 사용 먼저 하고 반납하면 되는 겁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일단 집행 시점에는 약간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진종오 위원 결정권자도 선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당시에 결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결재하고 본인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제기 안 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 사무처에서 보좌를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추후에는 어떻게 계획 있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향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배우자 동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배우자 동행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동행 비용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배우자의 세부 출장 일정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보고서에 그 배우자 동행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서 저희 선거관리위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공무로 국외출장 가셨는데 몰디브 갔다 온 사실이 있어요. 방콕하고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베네치아 이렇게 총 4건인데 출장지 선택은 누가 해요? 출장 선택을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몰디브 같은 경우는 몰디브 선관위 초청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진종오 위원 초청을 받고 갔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타키나발루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재외공관이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되면서 신설되는 공간에는 재외선거 준비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했거든요. 호주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도 신설되는 공관 때 다녀온 적이 있고 신설될 때마다 다녀오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여긴 다 휴양지 같아서, 일반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딱 봐도 다 휴양지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출장 결과보고서를 보시면요……

○진중오 위원 아니, 결과보고서야 어떻게든 쓰지요. 그런데 출장지 선택 자체가 ‘신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신규로, 신규 공관이 여기만 있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시점에서는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진중오 위원 딱 이거 확실하신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런데 차장님, 언론에 보면 이 출장 국가라든지 도시도 선관위원장님이 다 결정했다고 나왔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중앙위원장께서 가신 국가는 중앙위원장이 정하는 것 맞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 해외출장 가는데 그 업무에 따라서 업무 부서에서 출장할 업무하고 기관하고 그걸 다 세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관위처럼 위원장이 직접 가는 나라를 선택하고 도시를 선택한다? 저는 이것부터가 다분히 업무보다는 외유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그 부분은 중앙위원장께서 딱 어느 나라를 특정 짓는 게 아니고 저희 사무처에서 이 나라들 중 이 나라를 갔으면 좋겠다는 나라를 후보군을 추리면 그중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선 이걸 업무보다도 다분히 외유성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부인 했다고 그러니까, 동부인. 그렇지 않나요? 공적인 업무 보러 갔는데 부인이 따라가? 저는 거치장 거릴 것 같은데…… 안 따라가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은데,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업무 볼 수 있잖아. 배우자가 따라가면 배우자 챙겨야지요. 배우자 따라가면 직원 하나 붙었다고 제가 언론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배우자 담당 직원도 있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면 국가예산이 어디다 쓰인 거지요? 이걸 세금 횡령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횡령이라고 봐요. 그런데 반환을 했는데 따라간 배우자 담당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한 부분은 소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해당 직원……

○서명옥 위원 대통령 영부인도 아니고 어떻게 선관위원장이 동부인 해 가면서 동부인 담당 직원까지 붙일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해당 직원이 아예 100% 따라붙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이 사모님이 이동할 때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사모님이 호텔 방에만 있었겠어요? 그건 아니지요, 전담 직원이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관위가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를 철실하게 보여주는 전적인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 저희들이 부족한 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반환만 받아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에 따라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시겠지만 지금 관련해서 합수본 수사 그리고 열려지는 특검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위원님, 그러면 4번에 대해서는 시정으로 변경한다는 거지요?

○진종오 위원 예,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디브 관련해서 그리고 신규 공관 관련해서 출장 후에 관련된 보고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데 위원님실에 제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그 외에 3번부터 7번까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이상식 위원 독일출장 선거 실패사례 보고 왔다는 그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것도 본 것 같은데……

○전문위원 황승기 13번에, 아직 보고……

○이상식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빨리 봤구나.

없습니다, 저는.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4번은 시정으로 하고 3번은 주의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3번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3번에 대해서 아까 얘기……

○진종오 위원 3번 관련해서 얘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비비 불용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5페이지 표를 보시면 위법행위예방활동 34억 그리고 선거여론조사심의 7억 7000. 그렇지요? 그러면 후보자가 아까 등록 수가 감소돼서 이게 불용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후보자가 등록 감소된 거랑,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부사업이랑은 후보자 감소랑 어떤 연관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후보자 감소 부분은 불용 전체액의 주 원인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위법행위예방활동 같은 경우에는 공정선거지원단이라고, 아시겠지만 선거법 10조의2에 따라서 운영하는 일반인 위법행위예방활동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짧은 기간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된 만큼 인원들을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리고 차장님, 5페이지 보시면요 배정액이 있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있는데 집행률이 다 퍼센티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 결산보고서에는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서는 빠졌습니다.

○서명옥 위원 잘 못 보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닌 것 같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절대 아닙니다.

○서명옥 위원 앞으로는요 집행률도 꼭, 퍼센티지 꼭 같이 기재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5번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니까 주의조치로 가는 게 나올까요 아니면 제도개선으로 낮추는 게 나올까요?

○서명옥 위원 저는 주의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선관위는 지금 해체해야 될 수준인데 주의, 제도개선 가지고 안 됩니다.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어떻게 하세요,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히 하부직원들은 이제까지 관성에, 사실은 타성에 젖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미리 예측도 못 하고 그런 건 있는데 저는 고위직들 이런 분들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직원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제도개선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진중오 위원님.

○진중오 위원 저는 아까 서명옥 위원님 말씀처럼 임기 만료가 남은 위원들이라고, 그런 게 좀 많이 쏠려서요. 저는 주의를……

○이상식 위원 그거는 딴 거고 이거는 3번.

○진중오 위원 지금 5번 말씀하시는……

○이상식 위원 5번은 아니고, 5번은 당연히 시정으로 하고. 5번은 시정이지요, 굉장히 높고.

○서명옥 위원 3번, 예비비.

○진중오 위원 3번, 저는 주의로 가야지요.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5페이지 3번, 주의로 간다고요? 주의로 갈까요 아니면 보류할까요?

○이상식 위원 이거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그러면 좀 이따 위원장님 오시면 위원장님 판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4번은 시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연번 5번이요. 연번 5번은 이거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는 그렇게 바랍니다만 위원님들 말씀이……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서명옥 위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상식 위원 이거는 주의로 해야 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주의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명옥 위원 주의도 약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주의로 하시고요.

연번 6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연번 6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수용이고.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번 7번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연번 7번 저희들 제도개선 의견 드렸는데요.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서명옥 위원 차장님은 단계를 시정을 갖다가 제도개선으로까지 두 단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이 부분만큼은, 궐위선거에 60일 안에 모든 걸 수의계약 그걸 경쟁입찰로 붙이는 부분 자체가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면 한 단계 낮춰서 주의지요. 시정에서 바로 제도개선까지는 어렵지 않나요?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상식 위원 나름대로 그거는 있어 보이네요. 물론 선관위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선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짧아 가지고 준비하는 데…… 이거는 그래서 다른 부처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제도개선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진중오 위원님.

○진중오 위원 저도 주의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간이 짧다고 말씀 주셨지만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주의 정도까지는……

○서명옥 위원 한 단계 낮춰서 주의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한 단계 낮춰서 주의로 할까요 아니면 보류했다가 좀 이따 위원장님 오시면 판단하시라고 그럴까요?

○진중오 위원 시정요구에도 시장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도개선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받아서 수용하겠습니다.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주의로 되겠지요, 주의로?

○서명옥 위원 그리고 아까 함께 보류된 게 몇 번이었지, 연번?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연번 3번.

○서명옥 위원 이것도 위원장님 계실 때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야지 오시는 위원장님한테 떠넘길 수는 없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3번은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연번 3번은 아까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님들은 주의라고 하셨잖아요, 5페이지 3번. 이것 결정할까요, 보류할까요?

○이상식 위원 수적으로 불리한데…… 저는 제도개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그러면 보류할게요.

그다음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연번 8번입니다. 14쪽인데요.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기준에 대한 정기적 점검·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인데요. 저희들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투표용지 인쇄비용 자체가 지역에 따른 편차라든지 인쇄 시설, 인쇄 방식, 인쇄 물량, 후보자 수에 따른 투표용지 길이에 따라서, 선지 길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단가가 상이한 특성이 있어서

명확한 소요액을 지금 추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국가 선거 같은 경우에는 결산액 또 그리고 평균 제작 단가를 기초로 지금 편성 요구할 수 있는 반면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집행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선거 관리경비 산출 기준에 따라서 지금 기계적으로 산출함에 따라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투표용지 인쇄 축소 제도의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투표용지 인쇄 예산에 있어서도 내 선거 시 집행 결과 및 인쇄소, 인쇄 방식, 물량, 물가 상승 등 변수에 따른 제작 단가 추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실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주의를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채현일 주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서명옥 위원 시정인데 주의로 해 달라는데 차장님, 선관위가 선거 한두 번 하신 거 아니지요? 선관위가 선거 한두 번 하신 거 아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직업이, 업무가 선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투표용지에 있어서 추계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시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말씀드렸듯이 국가 선거에 있어서는 딱 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선거 당일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2009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80%, 70%, 60% 이렇게 줄었는데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하는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비용 산출기준이 단가 곱하기 선거인수 곱하기 1.1로 돼 있는데요. 이게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개정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투표용지 인쇄비용과 집행액 또 불용액에 차이가 생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서명옥 위원 차장님, 지금 본인 스스로 시인하셨는데 미처 규정을 바꾸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시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방선거 처음 아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맞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면 지방선거 대체 몇 번 치렀습니까? 그리고 매년 우리가 언론을 보고 분위기를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 이번 대선에 투표율이 어느 정도 높다, 안 높다는 직감적으로 오지 않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투표율……

○서명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자꾸 핑계고요. 지금까지 항상 선관위는 타성에 젖어서 기계처럼 안이하게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누적되다가 이번 선거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났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 주의가 아니고 제도개선도 아닙니다.

○박상웅 위원 이것은 징계다, 징계.

○서명옥 위원 사실은 징계감이에요, 징계감이라고요. 본연의 선관위 업무가 선거 준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처 준비를 못 했다고, 파악을 못 했다고요? 정말 그것은 핑계입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데 저는 변명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인과관계를 따져 가지고 206억 6200만 원을 불용한 것하고 투표용지가 송파에서 부족한 것하고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거지요, 과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일단 저희들이 투표용지 인쇄를 하고 나서 돈이 남지 않습니까? 비용이 남으면 그 돈 자체를 지방선거관리경비에서는 선거비용 보전비용 자체를 사전에 받는 게 아니고 집행하고 나서 얼마쯤 남았는지를 따지고 보전비용을 나중에 청구하게 됩니다, 자치단체에. 청구할 때 이번 투표용지 인쇄비용 같은 경우는 고유경비라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채현일 위원, 박주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식 위원 아니, 그러면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업무는 지자체에 위탁하니까, 선관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니, 자치단체 경비를 관할 선관위가 납부를 받아서 집행하고 잔액을 자치단체에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집행지침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이 단가에 예상 선거인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지키신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게 지켜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겁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투표용지 전체가 전국적으로 모자라지 않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배분의 문제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송파 같은 경우는 배분의 문제입니다.

○이상식 위원 배분의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이상식 위원 제 이야기는 선관위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고 불용하고 투표용지 부족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느냐, 야당 위원님들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쉰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이상식 위원님 말씀처럼 인과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서명옥 위원 저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상웅 위원 하나 질문드릴게요.

2022년도 제8회 지방선거 때 예산액이 124억,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박상웅 위원 그런데 44억을 집행하고 80억을 불용액 처리했네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뭐 때문에 120억이나 하고 3분의 2를 안 썼어. 그러면 유권자 총수를 계산했을 때 이번 지방선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단가는 24.23원이라고 하더라도 3분의 1만 집행하고 3분의 2를 불용액으로 했는데……

○이상식 위원 그때는 그게 없었지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없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없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총유권자수 곱하기 단가를 계산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단가 곱하기 선거인수 곱하기 1.1을 계산해서 전년도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니까 1.1을,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대비했다 이거지요? 1.2라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1.1.

○이상식 위원 20%……

○박상웅 위원 20%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10%입니다.

○박상웅 위원 그랬는데 그때는 전국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없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없었습니다.

○박상웅 위원 투표율이 저조해 가지고 유권자가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부족 사태가 발견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8회 지선 때……

○박상웅 위원 예를 들어서 80명이 와야 되는 자리에 50명이 와서, 그런데 사실은 용지가 10장밖에 안 남아 있는데 안 한 사람이 30명이 넘어.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유권자 대비해서 모자란 건지 남는 건지……

○이상식 위원 그랬으면 그때 문제가 벌써 났겠지, 2022년도에.

○박상웅 위원 그때는 그렇게 발견이 안 됐다가 재수 없이 이번에 발견됐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닙니다. 8회 지선 때인 2022년에는 투표용지 인쇄비율이 70%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인쇄 물량 자체는 남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용지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남은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여쭙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2로 곱해 가지고 20% 여유 있게 인쇄를 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인쇄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박상웅 위원 아니, 2002년도 대비해서 동일하게 그 기준으로 유권자 총수의 1.2배로 해서, 그러니까 20% 여유가 남도록 해서 총 투표용지를 인쇄를 했냐 이 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시겠지만 투표용지 인쇄는 이번에 문제가 돼서 최하 하한 기준 50%를 기준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장 적게 인쇄한 데가 50%고 가장 높게 인쇄하는 100%를 인쇄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1.1이라는 것, 110%를 했다는 것은 인쇄비율이 아니고 인쇄요금 산출을 할 때 선거인수 곱하기 110%를 해서 자치단체에 산출 요구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1.2배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110%.

○박상웅 위원 그러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용지 인쇄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그렇지요, 기초의원도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다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대통령선거 하듯이 전체적으로 용지를 얼마 여유 있게 일괄 인쇄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마다 거기에 맞게, 그 지역의 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30만 명이다 그러면 30만의 한 10%, 20% 여유 있게 인쇄를 한 게 아니고 30만에 딱 맞게 인쇄를 했다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투표용지 인쇄하고 인쇄비용 단가 산출하는 부분은……

○박상웅 위원 단가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집행 금액이 워낙 현저하게 차이 나니까 단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선관위가 나쁜 관행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낮은 투표율을 고려할 때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내부에서 서로 머리 맞대고 결정해 가지고 ‘한 60%만 인쇄하자, 70%만 인쇄하자, 그래도 전국적으로 투표용지가 모자라지 않는다’ 이러지만 지역 지방선거는 지역마다 후보자 이름이 다 다르고 매수도 다 다른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정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대로 그 지역의 유권자가 10만 명, 20만 명, 기본적으로 다 인쇄를 했어야 돼요. 다른 지역에 모자란다고, 남는다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는 그 지역 후보가 다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인식해서……

○박상웅 위원 그것을 이제 인식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어제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100% 인쇄를 전제로 하고……

○박상웅 위원 앞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전국이 들끓고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맞습니다.

○박상웅 위원 선관위는 잠이 잘 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잠이 잘 안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상웅 위원 잠이 안 오는데 오늘 말하는 태도가 임기응변으로 때우려고 이런 짓을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닙니다, 절대. 박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인쇄하는 비율과 그다음에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사실은 다른 내용이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박상웅 위원 다른 내용은 무슨 다른 내용이야 투표용지 가지고 일어난 일이지.

○이상식 위원 시간의 선후 관계를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6·3 지방선거고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쓴 작년 예산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작년 대선입니다.

○이상식 위원 작년 예산, 대통령선거에서 206억이 불용됐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이번 사건으로 화가 나 가지고 과거에 대해서 소급을 적용하는 거지.

○박상웅 위원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잘못이 이번까지 계속 이어 오니까 지난 대선 때도 잘못됐고 여기까지도 잘못됐고 이번에 만약에 송파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다음 선거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을 못 믿는 거지. 어차피 민주시민이 100% 투표 안 할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 30% 제쳐도 된다 이런 판단을 선관위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이 현장에서 자꾸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은 특히 지방선거 때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선거일 투표자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잘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이것 보세요. 민주주의는 지켜지는 바탕이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기본은 1인 1표가 주어지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맞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서 투표자가 적을 것이라 예단을 하고 실제 현실에 맞아떨어졌다 하더라도 선관위는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되지. 그래 가지고 이 잘못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답변하는 형식으로 선관위를 대표해서 이래서 그동안 관행이 그렇고 저렇고 해서 이번에 보니까 많이 놀랐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용지를 많이 인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면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할 것 같아요? 선관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송구합니다.

○이상식 위원 국민들과 야당의 분노는 당연히 이해하고 엑셉트(accept)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죄형법정주의고 소급효가 금지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현재 결산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분노나 감정을 과거로 전이시키지 말자 이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이 분노를 내년에 할까요?

(웃음소리)

○이상식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만……

○박상웅 위원 내년 결산 때 할까요?

○이상식 위원 그래도 되고요.

○서명옥 위원 차장님, 이 차에…… 저도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닌데 선관위가 보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너무 방만하고 안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시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웅 위원 시정 정도가 아니라 징계라니까.

○서명옥 위원 맞아요. 그렇지만 특검도 하고 국조에서 하고 있고 하니까.

○이상식 위원 제가 보기에 큰 것은 거기에서 단죄가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행정적이고 기술적이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박상웅 위원 이것은 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명옥 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이것을 주의로 제도개선 나가잖아요? 그러면 선관위

직원들 또 안이합니다.

○박상웅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면죄부 준 거나 마찬가지라……

○서명옥 위원 알다시피 가장 신의 직장이 어디지요? 선관위예요. 옛날 공무원들이 신의 직장이라고 다 갔어요, 그쪽에.

○이상식 위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나 조직이라도 거기서 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출신이지만.

○박상웅 위원 어쨌든 이미 었어진 일이고 이것도 작년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결산이기 때문에 시정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주의로 하면 국회가 참 무기력한 겁니다. 그때의 잘못을……

○이상식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를 더 하면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것 비슷하게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박상웅 위원 그러니까 하실 말씀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 위원님으로 충분히 하실 말씀이고.

어차피 시정돼야 될 상황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냥 주의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머리 굽고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이상식 위원 저는 하여튼 하더라도 부대의견으로 꼭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부대의견으로 남기시고 시정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 다른 것 다 넘어가더라도.

○소위원장 박주민 일단은 제가 보니까 이상식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원하시지만 워낙 강하시니까……

○이상식 위원 예, 전체적인……

○소위원장 박주민 아마 말씀하셨던 워딩이 다 회의록에 기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시정으로 정리를 하시고, 이것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9번입니다.

16쪽, 대통령선거 용역비 급증에 따른 점검 필요는 저희들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9번까지 아까 보고를 했지요?

9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은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보니까 채현일 위원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3번에 대해서 보류가 됐다고 하던데……

○서명옥 위원 저희는 주의를 했는데 차장님은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는데, 정말 선관위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박상웅 위원 치외법권 같아.

○소위원장 박주민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아까 제가 없는 가운데 질의하셨을 텐데 대부분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게 모아졌습니까? 이상식 위원님이 제도개선을 얘기하셨다고……

○이상식 위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나머지 위원님들은 주의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아까의 흐름을 보면 이상식 위원님이 왠지 양보를 또 하실 것 같은데……

○이상식 위원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이것도 주의로 유지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번부터 또 보고해 주시는데요. 일단 12번까지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황승기 연번 10번부터 12번까지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명옥·박상웅·용혜인·진종오 위원님께서 특별정려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별정려금은 선거기간 중 지급하는 격려금의 일종으로 25년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5급, 6급을 기준으로 총 2628명에게 4개월간 11억 1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은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선관위 직원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파견·위촉 공무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지급하는 방식이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정돼 있으므로 실제로는 읍·면·동선관위 간사·서기만 지급이 가능하고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투표관리관 등 단기간 위촉되는 선거사무 종사자는 여전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일률 지급되고 있어 본연의 선거사무 수행에 대해 별도의 격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특별정려금에 대해서는 지급 필요성과 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유형과 관련해서 서명옥 위원님께서 시정을, 박상웅·용혜인·진종오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박상웅 위원님께서 재외선거 인력 운영과 관련된 국외여비 산정에 있어 재외선거관 파견 여건을 반영한 소요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외선거 인력 운영 세부사업 비목 중에서 파견인력 체제지원 명목은 3억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그중 4500만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 파견은 약 2개월 남짓 단기 파견이었는데 예산 산정에 있어서는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의 편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여비를 산정한 결과 세부사업의 절반이 넘는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재외선거 관리 예산의 불용 원인을 세부 비목별로 분석하고 향후 권위선거 등 긴급한 선거에서도 실제 파견기간 인력 수요들을 반영해서 예비비를 적정 수준으로 산정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박상웅 위원님께서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 예산의 운용 근거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탁선거 관리에 있어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 예산으로 운용됨에 따라 국회의 결산심사 및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에서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25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련 위탁단체 부담경비 역시 정부 결산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국회는 2016년도 이후 결산에서 반복적으로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5년간 위탁선거경비의 연도별 수입, 집행 및 잔액 현황과 별도 계좌 관리 방식을 공개하고 해당 자금을 국가 세입 및 세출 예산에 편입하거나 최소한 이에 준하는 수준의 결산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정부 측 의견을 좀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연번 10번 특별정려금 지급 필요성 및 지급 방식 재검토 필요와 관련해서는 조치 유형을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지적 겹쳐히 수용합니다. 향후 저희들 특별정려금은 선관위 직원을 제외하고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행안위 결산 국회 시 선거사무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정려금의 지급 범위가 파견·위촉 공무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를 계기로 해서 금년 초에 지방공무원인 읍·면·동위원회 간사·서기를 대상으로 기존 지급해 온 사례금 대신에 특별정려금으로 확대 지급하기 위해서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회 지방선거 때 최초로 지방공무원들만 320명한테 41억 원 상당을 특별정려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인 읍·면·동위원회 간사·서기의 적극적인 선거사무 종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특별정려금 지급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향후 국가선거 시에도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연번 11번 19쪽, 재외선거 파견 여건을 반영한 소요액 산정 필요는 박상웅 위원님 의견대로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연번 12번 20쪽,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 예산 외 운용 근거 마련 필요와 관련해서도 박상웅 위원님 제도개선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위탁선거법에 위탁선거경비 세입·세출의 운용 근거를 규정할 수 있도록 양부남 의원님께서 작년 8월에 발의해 주신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입법 지원할 예정이고요. 위탁선거법 78조의2 개정에 따른 위탁선거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 통제 강화 및 위탁선거경비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중앙선관위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위탁선거경비의 운용 및 회계처리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연간 위탁선거경비 결산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추가 조치 등을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박상웅 위원 제가 좀 몰라서 그런데 용어가 수당이나 격려금이나 장려금이나 하는 것은 익숙한데 정려금이라는 게 이게 일본 사전에 나오는 건지, 처음 들어 보는 말이라.

○서명옥 위원 국어사전에 없더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특별정려금이 선거관리위원회법 19조의2에 그 용어가 있는데 다른 규정에는 없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이고 일반 선관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정려금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한자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정’자가 무슨 ‘정’자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바를 정, 정진하니까……

○박상웅 위원 이게 나는 정기적으로 준다는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에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도 입사하기 전 사항이긴 한데요. 특별정려금 자체가 아마 특정 시기에 선거관리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고생한다는 취지로 선거관리……

○박상웅 위원 고생하지만 반듯하게 바로 해라 그래서 바를 정 자 썼다 이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런 것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사전에 저랑 얘기하실 때 제대로 선거 똑바로 안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반성하고 있는데요.

○진종오 위원 아니, 이게 반성해서는 안 되고. 저도 제도개선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저는 제도개선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데 이것을 특별정려금까지? 그런데 실제로 저도 투표를 하러 가 봤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랑 말씀 나누실 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식 위원 아니,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은 돈을 준 게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면 안 주고 불용한 게 문제라는 겁니까?

○서명옥 위원 특별정려금 자체가 문제인 거지요.

○이상식 위원 특별정려금 자체가 문제다?

○서명옥 위원 그렇지요.

○박상웅 위원 아니, 돈을 주는 것은 줄 수 있는데, 그게 일종의 수당이지요?

○서명옥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수당은 따로 또 나가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수당이라기보다는 격려금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산은 편성됐는데, 그러면 제도개선을 해야지.

○서명옥 위원 아니지요. 시정을 해야지.

○이상식 위원 그리고 정부 예산 항목으로 해서 그게 되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안 쓰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없애든지.

○박상웅 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고치는 것하고 용어를 일반 공용 용어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고치고, 대한민국 어떤 사전에도 안 나오는 용어를 혼자서만 선관위에서 쓰고 있으면 되나.

○서명옥 위원 제가 질의드릴게요.

저는 그게 하나의 편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공무원의 봉급 수준에 준하는 많은 용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만 특별정려금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쓸까요? 저는 그게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정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용어요?

○서명옥 위원 잘 아시겠지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 고생한 직원들한테 격려금 드리고 싶지요.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시적으로요 초과근무수당은 더 늘려 줄 수 가 있어요. 그 방법을 쓰셔서, 왜냐하면 선관위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거나 모든 것을 예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면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시기에는 초과근무시간 자체, 근무하시는 시간 자체가 200시간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상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맥시мум이 100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소위 말하면 충당시켜 주기 위해서 특별정려금이라는 것을 도입하지 않았나 한 것 같습니다.

○서명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과근무수당은요 기관장의 승인하에 범위를 넓혀 줄 수가 있어요. 시간을 확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격려금 조로 주든가 해야지 왜 다른 기관에서 없는, 대한민국의 사전에도 안 나오는 특별정려금이라는 형식으로 편법으로 주고 있냐고요.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의 선거 업무는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맞습니다.

○서명옥 위원 물론 그 당시에 선관위 직원 고생하지만요 더 고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더 고생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방공무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9회 지방선거 때부터 특별정려금을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위원회 간사·서기분들, 지방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한 겁니다.

○서명옥 위원 그것은 선관위에서 굳이 간섭 안 해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의 범위 내에서 격려금 줄 수 있고 격려금 나갑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 특별정려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저는 선관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편법입니다. 왜 굳이 특별정려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나요? 저는 이것부터 딱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정당당하게 격려금, 기타 경비에서 격려금으로 예산 편성하면 되잖아요. 지금 선관위에서 격려금 나가고 있지요? 나가고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일반 격려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기관

운영경비에 있는 격려금입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격려성으로 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격려금 예산에서 잡아 가지고 더 주면 되는 거지 왜 또 별도로 이중, 삼중의 정려금이라는 이름을 만드냐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잠시 후에 다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만 저희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관리 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고 있는데 선거 관리한다고 격려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정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서명옥 위원 왜 이거 못 줍니까?

아, 질의하세요.

○이상식 위원 차장님, 아까 이게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선거관리위원회법 19조의2에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서명옥 위원 아니, 자기들이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요.

○이상식 위원 법률상의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개정시켜야지, 없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게 1992년 11월 11일자로 법은 돼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선관위의 내부에 적용되는 그런 선관위법을 우리 국회에서도 사실은 그거 잘 모르잖아요.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특별정려금이라는 그 말도 법률상의 용어라는 것을 몰랐지.

○박상웅 위원 모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용어 변경도 하고 다시 한번 적법성 심사를 받아서 다시 하는 게 맞아요. 주든지 안 주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이상식 위원 결론은 제도개선으로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박상웅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갑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그 부분 보완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어차피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도 해야 되고 국회에서도 개정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때 지금 말씀드린 19조의2 특별정려금이라는 부분의 용어라든지 그 부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박상웅 위원 이대로는 안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이상식 위원 제도개선.

○서명옥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되 저는 부칙으로 달게요.

특별정려금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요 공식적인 공무원에……

○이상식 위원 선관위법에서?

○서명옥 위원 아니요.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격려금, 수당, 초과근무수당 있잖아요. 거기의 용어로 부합하시고요. 예산 편성도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법은 국회가 하는 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니, 그러니까 법 개정 의견……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 때 우리가……

○**서명옥 위원** 내놓으시라 그래요.

○**이광희 위원** 거기서 내지 말고 우리가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선관위가 어떻게 법률……

○**이상식 위원** 선관위는 어차피 법률안 제출권 없으니까.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부칙으로 다는 것 저는 찬성하고요. 그때 그렇게 변경한다 이런 내용이 적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개정안 의견서를 내세요, 행안위에. 어차피 선관위 관리 업무는 행안위가 하니까, 행안위에 법안소위1·2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번에 국감 때 아마 이런 것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그 내용에 방금 말씀하셨던 특별정려금의 명칭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것에 대한 얘기는 없으십니까?

11번, 12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다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13번, 14번, 부대의견까지 전문위원님이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황승기** 22페이지입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 국외출장·연구성과의 환류체계를 점검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구 국외출장은 총 2회 실시되었는데 25년 11월 독일 출장에서는 베를린의 선거 인력·물품 부족에 따른 투표소 혼란과 재선거 사례,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주요 연구주제로 조사하였습니다.

출장과 같은 시기인 25년 11월에서 12월에는 위원회 내부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을 축소하는 지침 개정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출장 직후 9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실제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소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 선거관리 실패 사례를 예산을 들여 조사하고도 그 결과가 관련 정책의 재검토·보완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선거연수원 선거연구부와 선거관리과 간 연구 결과의 공유·검토 등 후속 환류체계도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외출장·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관련 정책 부서에 의무적으로 회람·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 결과를 기록하는 환류 절차를 신설하고 주요 선거 관련 정책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관련성 있는 기존 연구·출장 결과를 참고·검토할 수 있도록 부서 간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국외출장·연구성과가 실제 제도개선이나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활용도를 제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명옥·김영배·이광희 의원님께서 격려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객관성 확보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5회계연도 격려금 집행내역을 보면 일부 우수부서나 특별한 성과를 거둔 부서에 한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도에 편제된 전 부서에 걸쳐 총 35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준비 격려금 명목으로 33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격려금이 특별한 성과나 업무 부담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조직 전반에 광범위하게 배분된 경우 사실상 보편적·복리후생성 경비로 운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격려금이 사실상 전 부서에 관행적으로 배분되거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보편적 보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금액 산정, 심사·승인 절차 및 다른 수당·보상과의 중복 여부 확인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사유와 심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등 격려금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서명옥 의원님께서서는 시정으로, 김영배 의원님께서서는 주의, 이광희 의원님께서서는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중앙선거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상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쇄신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22쪽, 연번 13번 국외출장·연구성과의 환류체계 점검 및 수립 필요와 관련해서 이광희 의원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내부 업무포털 그리고 대국민 홈페이지에 각각 등록하고 지금 공개 중에 있는데요.

외국 선거 그리고 정치제도 연구 목적의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한 관련 정책 부서 간 공유체계를 강화해서 해당 결과가 향후 제도개선이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번 14번, 격려금 지급 요건과 심사 절차 객관화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필요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시정요구유형을 시정과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격려금은 기관을 대표하여 우수부서를 대상으로 지급 중인데 격려금 지급 당시에는 업무 추진 우수부서 등을 대상으로 격려금을 실제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부서에 나누어지는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지적 내용을 반영해서 기관평가우수위원회 또 연구단 및 각종 TF팀, 위탁선거대행위원회 또 조사·단속 우수사례나 감사 우수사례 등 지급 대상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대상별 금액 설정 등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 권영진 의원님 주신 선거관리위원회 근본적 쇄신 대책 마련 필요와 관련해서 의원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수용하겠습니다. 향후 철저한 쇄신 노력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9회 지방선거 선거 당일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수 집계 오입력으로 인해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킨 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해 왔던 투표와 개표 절차 등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회와 언론 등 외부에서 제기된 의견과 함께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관위 조직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해 부족한 점을 개혁할 수 있도록 현재 위원회조직개편연구단 그리고 투개표절차사무개선연구단, 정치관계법개편연구단 등 3개의 자체 연구단을 지금 7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편성해 운영 중인데 운영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을 통해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일단 그 단을 운영하면서 널 의견에 아까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도 검토를 해서 같이 의견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정려금 문제나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것까지 여기에서 다룬다는 게 좀 하긴 하지만, 하여튼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정부 측 의견에 기반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지요.

○서명옥 위원 차장님, 연번 13번 보시면 해외 출장·연수를 갔다가, 25년 11월 달에 다녀왔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서명옥 위원 거기서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 가서 여러 가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든지 그런 문제를 보고 왔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서명옥 위원 그런데 보통 직원들이라든지 간부들이 해외연수 갔다 오면 그 공여는 어떤 방법을 하고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갔다 온 출장팀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 결과 보고를 하고……

○서명옥 위원 누구한테 보고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해당, 조직행정과라고 있습니다. 조직행정과에 제출하게 됩니다.

○서명옥 위원 전 직원 환류는 안 하고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환류는 저희가 업무포털에 공유하게 됩니다.

○서명옥 위원 그냥 업무포털에 공개하는 정도로 끝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서명옥 위원 그러니까 공유가 안 되지요. 업무포털 누가 들어가서 봅니까? 안 보지요. 그래 놓고 연번 5번에 보면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이 해외출장 다녀오면 전 직원들한테 공유하고 큰 실익이 났다고요?

정말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하지 마세요. 이게 제대로 연수를 가서 이런 걸 보고 와서 정말 돈 아깝지 않게 전 직원들한테 같은 경험을 공유했다면 금년과 같은 투표용지 사태 없었지요. 지금 따로따로 놓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독일 사례는 저도 연구팀들이 갔다 온 걸 갖고 열람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번 6·3 지방선거 때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저희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간부가 되시면 그런 것을 보고 왔었으면 우리 투표에서 이런 상황 있지 않을까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간부들의 역할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위원님 지적……

○서명옥 위원 괜히 월급 왜 많이 받고 있어요, 직원들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서명옥 위원 아니,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전체적인 거시적인 분야에서 업무를 보라고 간부를 두고 돈도 그렇게 많이 주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송구합니다.

○서명옥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도개선으로 끝난다고요? 저는 시정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시정요구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일단 다 질의를 좀 더 하시지요.

○서명옥 위원 그리고 연번 14번에 보시면 격려금을 전 부서에 다 쓰고 있어요. 격려금 전 부서에 다 쓰고 있지요. 따로 선거기간이라고 정려금 또 주고 지요.

그리고 차장님, 격려금의 목적이 규정에 뭐라고 돼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기관을 대표해서 우수부서와 직원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렇지요. 격려금은 전 부서에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예산편성에. 맞지 않다고요. 특별한 직원에 대해서 특별한 성과를 낸 사람에게 준다고, 그게 격려금의 목적이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맞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하나를 다 보면 선관위에서는 예산편성·예산집행 엉망이에요, 엉망. 정말 엉망이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서명옥 위원 제가 더 이상 뭘 말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너무 엉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송구합니다.

○서명옥 위원 기본적인 것, 어떤 공공기관에서 전 직원한테 주는 격려금 어디 있습니까

까? 그러니까 예산의 목적이란지 편성 기본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런데 격려금……

○서명옥 위원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될 간부님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재했을 거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격려금을 특정 시기에 아니면 1월 달이면 1월 달에 몇 개 부서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지급을 했습니다.

○서명옥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전 부서에 특별한 성과를 측정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줬잖아요. 그것은 격려금 성과 결과 안 봤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러니까 격려금 지급할 때는 그 목적을 기재하고 지급합니다.

○서명옥 위원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차장님. 차장님 뭔가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선관위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격려금 자체는, 일괄적으로 어떤 부서에 개개인마다 성과 산정 없이 주는 것은 격려금 성격하고 안 맞다고요. 예산편성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서명옥 위원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이것을 1년 365일로 나뉘었을 때, 예를 들면 국회의 국정감사라든지 하고 나면 담당부서에 대한 격려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서명옥 위원 자꾸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시라니까요.

국가에서 예산품목 왜 해 놓습니까? 걱정하게 돈을 아껴 쓰고 적재적소에 잘 쓰라고 해 놔지 않습니까? 그것을 편의성으로 격려금 갖다가 365일 해 가지고 전 직원을 나눠줬다고요? 정말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게 안 했다고요.

○서명옥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 부서에 특별한 성과 없었대요.

○이광희 위원 그렇게 안 했대.

○서명옥 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직무대리님, 그러면 그렇게 안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러니까 1년이 끝나고 나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 매년 받으셔야 되고 우리나라가 선거가 없는 해가 없습니다. 사실 내년이 유일하게 선거가 없는데, 어찌 보면 또 선거가 생길 수 있어요, 보궐선거. 이미 강원 강릉 쪽에는 확정이 됐고요.

그러면 선거 치르게 되고 국정감사,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내년도에 격려금이 모든 부서에 지급되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소위원장 박주민 그냥 여쭙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소위 말하면 문서화시키지는 못했었는데 이번 결산국회의 지적들이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서 격려금 지급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또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신축공사와 청사 주변의 동결기 환경관리를 잘해도 격려금을 주고, 이런 것들을 좀 손을 보시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걸 다 기관장이 집행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금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이라든지 상임위원이 현장방문할 때도 있습니다. 각급 구시군선관위 가서 격려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집행할 때도 있고요. 대부분 사무총장이 집행을 하십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 돈이 그러면 145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닙니다. 그것은 기관운영경비 전체가 그건 거고요. 저희들 격려금 예산으로는 기타운영비라고 210-16에 총 9억 8000여만 원이 예산에 있는데, 9억 84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 과 운영비라고 해서 272개 각 과에서 사용하는 경비가 7억 5300만 원 정도가 되고, 직원들 축·조의금이 한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기관운영비 한 4000만 원 그리고 격려금으로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데 격려금이 조금 모자랐을 때 다른 용도를 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선관위원장 할 수 있는 격려금 5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전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예산액상으로는. 210-16 기타운영비의 예산액이.

○채현일 위원 연번 13번, 이게 독일에 갔을 때 일주일 간 갔잖아요? 이게 선거연수원 직원들이 4명이 간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면 4명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든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채현일 위원 여기 위에 보면 선거연수원 직무교육 해 가지고 11억 2300만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이것은 출장비만이 아니고요. 연수원의 모든 직무교육 전부 합쳤을 때입니다. 일반적인 출장으로 하게 아마 한 삼사천 만 원 내외 아닐까 싶습니다.

○채현일 위원 이게 지금 선거연수 가서 연구주제를 조사…… 이게 보고서가 나오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보통 한 몇 페이지 정도 나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출장지마다 다른데요. 적게 나오면 한 40페이지,

많이 나오면 한 70~80페이지 그렇게 나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면 그전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갔다 오면 형식적으로 포털에 올리고 보통 그런 것을 보지는 않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올려 주면 관심 있는 직원들이 보는 건 맞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고. 11월 달에 갔는데 그 당시에 위원회 내부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하는 지침 개정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번 사태 같은 그런 일은 예상을 못 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때 베를린의 선거인력·물품 부족에 따른 투표소 혼란 이런 게 국내에 알려져 가지고 이것을 선관위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했나 그거를 보러 갔다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좀 2025년 11월하고 우리 지방선거하고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반년 정도 차이 나는데 거기서 뭘 배웠을 법도 한데 그렇지요? 그것을 포털에다 올려 가지고 내부 직원만 참고하고.

그때 언론 보도나 이런 것 난 적 없습니까, 선관위에서 갔다 와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시사점을 좀 얻어야 출장을 갔다 온 명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결산에서 지적인 것처럼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간에……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나라의 선거 실패 사례를 보러 딱 그냥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마 베를린에서 선거를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무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베를린 주의회 선거하고 연방의회 선거를 동시에 해 갖고……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선거하고 지방의회의원선거 같이 했는데 거기서 물품도 모자라고 뭐가 모자랐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그때는 투표용지를 복사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상식 위원 투표용지를 복사해서 나눠줬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저희 송파 사례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투표가 중단된 시간도 2만 시간 이상 됐고요.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면 불과 6개월 전에…… 올 6월이고 작년 11월이면 6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거기 갔다 왔으면 분명히 뭔가를 배웠을 것 같은데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런 사례를……

○이상식 위원 조직의 그런 점이 많이 아쉽네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이상식 위원 그 보고서는 포털에 그냥 올려 있습니까, 지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보고서 한번 구해 봐야 되겠네요.

○박상웅 위원 정말 올라가 있어요, 지금도? 확실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리고 이 4명이 비슷한 시기에 미국도 가고 독일도 갔는데 선발한 이 4명은 어떤 인원을 선발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보통 중앙선관위 직원이 가고 구시군선관위 직원, 시도선관위 직원들이 각 출장 할 때마다 적격 인원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서……

○박상웅 위원 제목만 이렇지 외유성 출장 아닌가, 이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웅 위원 제대로 공부하러 갔으면 제대로 보고하고 했을 텐데 그것 조사한다고 가 가지고 근처 낚새만 맡고 돌아다니다가 사진 찍고 온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환류 체계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구축을 못 했던 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거는요 앞으로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저 큰 기대 안 합니다, 선관위에—해외 출장 다녀오면 다녀온 사람의 누군가 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녀온 성과를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전 직원 앞에서 프리젠테이션하는 방법으로 좀 권해 주세요. 그래야 해외 돈 주고 갔다 온 보람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해외 출장 가는 사람도 조금 더 긴장해 가지고 잘 보고 올 것 아닙니까? 그냥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외 출장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면 모든 정보 내용을 전 직원들한테 간부회의에서 프리젠테이션합니다. 해외 어디 가서 뭘 보고 왔고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겠다고 다 보고를 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시정요구사항으로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상식 위원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격려금을 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니까 시정이라고 하는 거는 원상회복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원상회복시킬 수도 없고. 그런데 제도개선만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주의 정도로 해서 제도개선도 촉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지적했다 이런 의미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중간으로 주의로.

○서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시정하면 환수까지 해야 되니까 주의 정도로 정리하고요.

13번은 제도개선을 하되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해 주시고, 국감 때 아마 문제 제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측은 수용한다고 했고 위원님들도 특별히 문제 제기 없으시니까 이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제가 행안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행안위 위원님들의 선관위에 대한 온도가 뜨겁네요. 선관위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소위원장 박주민 이상으로 선관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소위가 논의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감사합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박주민 김재홍 차장직무대리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입니다.

저희 소방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박주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위에 상정된 소방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세현 소방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1건, 세출 9건, 1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 2건이 있었습니다.

세입 1건과 세출 1번부터 4번까지 5건에 대해 먼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 관련하여 징계부가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이내로 부과되는데 2025년 징수결정액 전액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소방청은 해당 징계부가금에 대한 감면 및 재결정을 위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징계위원회가 2025년 중에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징계부가금이 미수납액으로 남게 되었다고 용혜인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소방청은 징계부가금 감면 및 재결정을 위한 징계위원회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종 확정된 징계부가금을 조속히 징수 납부 처리하며 향후 징계부가금 감면 및 재결정을 위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결산 연도를 넘기지 않도록 징계위원회 운영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 관련입니다.

119항공정비실 건립 내역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전국의 소방헬기를 한 곳에서 정비하기 위하여 119항공정비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7월에 준공 예정인 항공정비실의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전문 정비인력의 적기 충원, 지자체 소유 헬기 정비를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 및 정비조직인증 취득,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광희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정비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119항공정비실인 국가기관도 정비조직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 법 개정이 필요하고 관련한 개정안이 26년 7월 9일 발의돼서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역시 이광희 위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소방청은 통합정비체계 구축 일정에 맞추어 정비인력 확보와 장비 구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보조금 교부 시에는 보조금 분할교부 및 지방비 부담능력·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소방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교부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상웅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액은 20억 1600만 원으로 집행률이 39.1%고 강원도는 0%, 경북은 1.6%, 충남은 6.3% 집행률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고보조금 교부 시 지자체별 재정력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교부 전에 확인하고 사업 진도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 교부하는 등 국고보조금 교부·집행관리 절차를 강화할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내역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분석결과 활용 감소에 따른 사업 효율성 저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 선정 및 활용 관리 필요를 내용으로 이광희 위원으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19빅데이터 분석 사업의 과제 선정 기준, 활용성과 관리, 환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빅데이터 분석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방 예방정보 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소방 관련 정보를 통합 구축·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두 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부적정한 예산 편성 및 타 세부사업 예산 집행 부적절이 지적되었습니다. 25년도에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일반연구비만 계상되었을 뿐 동 사업에 따르는 감리비, 조달수수료, 심의 수당 등은 독립적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리비는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의 관리용역비 낙찰차액을 전용해서 집행하였고 심의 수당과 조달수수료는 빅데이터 분석운영 세부사업 등 타 세부사업에 편성된 수용비를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성과 확인 필요가 지적되었습니다. 두 지적사항 모두 이광희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또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방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하고 다른 사업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지 않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소방청은 이용자 만족도, 처리기간 단축 등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개선에 반영할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번부터 7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소위원장 박주민 나눠서 하지요, 나눠서.

○전문위원 김세현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아까 나눠서 보고하신다고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전문위원 김세현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입니다.

세입 한 건 그리고 세출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히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세출의 네 번째,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하나는 주의 하나는 제도개선인데 이게 동일 위원님께서 동일 사업에 대해서 단위 사업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연구용역에 적절하게 하는 것과 성과평가까지 이어지는 게 한 카테고리 안에서 흐름이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한 가지 사업으로 병합하신 다음에 한 가지 쪽으로 의견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좀 염치는 없지만 한 가지로 내려 주신다면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방금 주신 말씀에 기반해서 질의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이것 연번 4번 주의와 제도개선을 하나로 좀 해서……

○이광희 위원 주의로 하나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 부적정한 예산 편성을 해서 실제로 집행이 이렇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도개선으로 하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이건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고 다른 위원님은 추가적인 의견 없다고 하셨으니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번부터 또 한 5개 정도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세현 편의를 위해서 뒷부분에 정리할 사항이 있어서 5번부터 7번까지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은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집행 부진 및 대규모 이월이 지적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소방청의 자체 개발 결과물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서버에 연계한 후 기능 점검 및 보안 확인 절차를 거쳐야 사업이 완료되는 구조입니다. 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완료 시점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5년도 예산 집행률이 10%로 저조했습니다.

또한 이송병원 선정기능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송병원 선정기능의 구급대 이용률이 21.8%이고 의료기관 응답률 또한 47.9%입니다. 현재 통계도 환자 단위가 아닌 요청 건수 기준으로 산출돼서 같은 환자에 대한 반복 요청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실제 활용 성과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상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소방청은 25년도 이월사업과 26년도 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환자 중증도별 이용률, 의료기관 응답률, 이송시간 단축 효과 등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이송병원 선정기능의 현장 활용 성과를 제고할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취급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25년도 예산현액은 26억 원을 전액 교부·집행하였습니다. 소방청 기준의 집행률입니다.

다만 연구기관의 연구비 실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특히 리튬금속 등 배터리 소재·제품에 대한 화재성상 및 소화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과제는 집행률이 19.8%에 불과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광희 위원으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소방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 체결 등을 적기에 수행하여 연구사업이 일정대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면밀하게 수행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입니다.

25년도 추경 배면물탱크 구매 사업은 외화 물품 구매임에도 입찰기준을 원화로 설정하여 환율 변동으로 입찰금액을 초과하여 전액 이월 발생했습니다. 또한 22년 추경을 통해 추진된 총 10대의 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 중 현재까지 4대가 미완료되었다는 지적이

박상웅·용혜인·이광희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또한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소방청은 향후 유사한 외산 장비 도입 시 제작사 기술지침 확정 일정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율 변동 등 집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며 국고보조사업의 시도별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제안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제안돼서 한 가지로 결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도개선은 박상웅·용혜인 위원, 주의는 이광희 위원이 제안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소방청은 예산편성 전 제작사의 기술보증 및 부품생산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기술검증절차 도입을 검토할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혜인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연번 5번, 6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7번입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두 번째 용혜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박상웅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이 각각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으로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배면물탱크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이게 외자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이었는데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원화를 기준으로 입찰공고를 냈는데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유찰이 두 번이나 되면서 해를 넘기게 된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달러를 기준으로 공고를 내서 계약을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외부적인 요소인 환율 변동에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저희가 반성하면서 그 점을 고려해서 가지고 제도개선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위원님들.

○박상웅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배면물탱크가 기존의 헬기에 장착을 하는 겁니까?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그렇습니다. 산불 등을 진화할 때 기존에는 밤비 버킷이라 그래 가지고 길쭉하게 생긴 가죽 물주머니 같은 걸로 뺐는데 그건 용량도 적거니와 물을 투하할 때 정확하게 뿌려지지 않는 게 있는데 배면물탱크로 하면 헬기에 고정식으로 큰 탱크를 부착시키는 겁니다.

○박상웅 위원 아예 부착시킨다고?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 안에 물을 넣을 때도 그렇고 뿌릴 때도 더 효율적이어서……

○박상웅 위원 헬기 기종이 다 똑같아야 됩니까?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헬기 기종마다 배면물탱크의 규격이나 이런 게 다소 달

라져서 특장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니까 헬기가 A, B, C 종류가 있다면 이것도 똑같이 A, B, C로 주문해야 되나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렇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배면물탱크에 문제가 발생하면 헬기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나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충분히 그럴 가능……

○박상웅 위원 물주머니 같으면 잘라 버리면 끝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고리를 풀어 버리면……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면물탱크에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구니가 줄에 매달려서 있다면 그게 무게중심이 자꾸 흔들리면서 도리어 더 위험하고 이것은 탁 부착하는 쪽이라서……

○박상웅 위원 그것은 위험하지 않은데, 이걸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지금 4대가 안 했 다네, 6대는 하고?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위원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공부를 거기까지 못 해 가지고 담당 항공과장이 왔는데 세부적인 것 설명을 드리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상웅 위원 혹시 쉽게 사진 자료라도 하나 있으면, 처음 보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그러면 항공과장하고 해당 과에서 배면물탱크에 대해서……

○박상웅 위원 자료 SNS로 받아 가지고 구경만 시켜 줘요, 그냥.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세부적인 것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이게 현장 산불 방제작업을 할 때 배면물탱크를 장착해서 실제 현장에 투입된 사례가 많나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지금 대체적으로 거의 배면물탱크 쪽으로 교체 중이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많이 쓰고 있어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쓰는 데 문제는 없었고?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지금까지 배면물탱크를 정상적으로 부착한 헬기가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사고가 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면물탱크 이후로는 사고 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어느 게 물탱크란 얘기야? 이 밑에 노란 거? 어느 거요? 거의 아랫면에 붙어 있어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네.

○채현일 위원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이게 1대에 20억이예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4대를 안 했다는 게 2022년 추경 때 하자고 해 가지고 6대는 그 후로 1대씩 했는데 지금 4대가 아직 미정이라는 건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일단 4대 미정인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배면물탱크 자체는 4대를 추가로 구입을 했고 해당 항공기 제작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부착을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그 바구니하고 용량이 많이 다르니까, 물 담는 용량이?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바구니가 제가 알기로 1000t 정도를 기준으로 800에서 1000t인데 이것은 1500에서 약간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바구니가 1000t을 담는다고?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1000리터입니다, 1000리터. 1t입니다, 1t.

○박상웅 위원 말을 똑바로 해야지.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죄송합니다.

○박상웅 위원 소방청에서 온 것 맞아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겁니다. 제 잘못입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면 그 물탱크 넣을 때는 강 위에 헬리콥터가 탁 앉아서 물 넣는 것 맞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옛날 바구니 같은 것은 지나가면서 걸리는 만큼만 거르고 올라갔는데 이 배면물탱크는 걸러 가면서 물을 담을 수도 있고 착지한 상태에서 호스를 통해 가지고 빨리 급수를 할 수도 있고 다용도로 급수가 가능합니다.

○서명옥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것 구경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한강 위에서 물을 넣더라고요.

○박상웅 위원 그게 꼭 필요한 장치라면 10대만 할 게 아니고 전국에 시도별로, 그런 것들이 중앙에만 많이 보급하고 있으면 뭐 하나, 산불 난 데 빨리 투입돼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것을 거제도까지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보급 대수를 좀 늘려야 되겠네, 그게 효과적이라면.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일단 헬기 자체가 워낙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만 해도 3대밖에 없고 중앙에 토털 30여 대가 있는데요.

○박상웅 위원 소방청에 헬기 30대 있어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34대가 토털 있습니다. 그런데 배면물탱크로는 거의 전환을 완료 시점입니다. 사업의 완료 시점입니다.

○박상웅 위원 완료되면 배면물탱크 사업이 완료된 헬기가 몇 대인데?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그게 34대가 되는 겁니다.

○박상웅 위원 아까는 4대가 미완료라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그러니까 그걸 빼놓고 지금 30대 정도 될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고 4대는 사 놓고 부착만 아직 미정 상태고 그것까지 다 달게 되면 중앙의 헬기들은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22년도 추경을 통해서 추진된 게 총 10대였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미 20대는 했다. 그 말이에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이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뭘 여기까지 와서 또 파악을 해? 파악해서 왔어야지.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죄송합니다.

○박상웅 위원 22년도 추경을 통해서 추진된 10대 헬기 중에 6대는 하고 현재 4대가 미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거의 다 부착을 했다니까 소방청에서 가동하는 34대의 헬기 중에 4대 빼면 그러면 30대가 다 부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배면물탱크가?

이것 담당하는……

○소위원장 박주민 담당하시는 분이 일어나서 설명하세요. 직접 설명하세요.

○박상웅 위원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가 누구예요?

○소위원장 박주민 일어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양해해 주시면 항공과장 왔습니다. 오늘 배석했는데……

○박상웅 위원 항공과장이 왔으면 빨리빨리 대답을 해 줘야지 옆에서.

○소위원장 박주민 빨리 설명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소방청소방항공과장 정건일 소방항공과장 정건일입니다.

22년도 사업이 총 10대를 설치하는 거였고요. 지금 현재 6대를 설치했고 1대는 설치가 불가하고요. 3대 가운데 물탱크는 이미 다 구입을 했고 부착하는 일만 2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상웅 위원 그건 이해를 했어. 그런데 아까 이게 총 몇 대가 될 거냐 했더니……

○소방청소방항공과장 정건일 총 10대입니다.

○박상웅 위원 총 10대인데 아까 왜 서른몇 대라 그래?

○소위원장 박주민 총 10대고……

○박상웅 위원 소방헬기 중에 이게 부착돼 가지고……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니까 34대를 다 배면물탱크를 붙이는 건 아니겠지요. 34대 중에 10대를 붙이는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방청소방항공과장 정건일 현재 도입하는 헬기들은 미리 배면물탱크를 부착한 상태에서 계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배면물탱크가 부착된 제품을 아예 통째로 사들이는 거예요?

○소방청소방항공과장 정건일 예, 그렇습니다. 구입할 때부터 그런 조건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래서 여쭙보는데 22년 추경은 10대인데 그 중에 4대는 못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방청소방항공과장 정건일 예.

○소위원장 박주민 25년은 1대를 아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22억을 편성했는데 이 22억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거예요, 25년도에 22억 편성한 건. 그 이유는 뭐예요?

○소방청소방항공과장 정건일 25년도 것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중앙구조본부 헬기 1대에 배면물탱크를 장착하는 거였는데 그것은 환율 문제 때문에 26년도로 넘어간 겁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니까 25년도에 1대를 추가로 하는 사업은 환율 문제 때문에 입찰 결과 잘 안 된 거고 22년도에 10대 하려고 하는 건 아직 4대가 안 된 거지요? 1대는 불가능하고 3대는 아직 안 된 거고.

○소방청소방항공과장 정건일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소방청에서 배면물탱크 장착한 것은 총 7대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렇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장착된 채로……

○소방청소방항공과장 정건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34대예요?

○진중오 위원 아까 처음에 우리가 혼선이 있었던 게 전체 소방청에 있는 헬기가 몇 대냐고 했을 때 34대라고 말씀하셨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맞습니다.

○진중오 위원 그게 화재진압용 헬기가 아니라 전체 소방청에 있는 헬기를 얘기하신 거지요?

○소방청소방항공과장 정건일 예, 맞습니다. 총 운영하는 헬기가 34대입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화재진압용 헬기는 몇 대 있어요?

○소방청소방항공과장 정건일 34대 모두 화재 진압, 구조·구급,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배면탱크가 붙은 것은 11대라는 거예요, 시도한 건 11대라는 거예요.

○박상웅 위원 그러면 22년도 추경 이후에 배면물탱크 장착된 채로 수입한 헬기는 지금 현재 수입돼서 보급이 돼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22년도 추경 이 6대 말고.

○소방청소방항공과장 정건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 현황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이렇게 하지요. 지금 이것을……

○전문위원 김세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주민 말씀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이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세현 소방헬기 34대가 맞고 신규로 된 것은 지금 강원에 하나, 충남에 하나 2대 있고 나머지는 교체입니다. 지금 2대가 신규입니다. 신규 오는 게 배면물탱크가 부착된 게 신규 2대가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배면물탱크가 부착돼 있는 게 지금 총 몇 대예요?

○전문위원 김세현 그러니까 총 11대지요. 교체 9대, 신규 2대 해서 11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물바구니로 가동을 하고 있나요?

○전문위원 김세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방청에서 자료 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시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니까 필요하면 한다는 거지요.

○박상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물바구니를 버리고 배면물탱크를 나머지 기종에 다 장착하겠다 이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청소방항공과장 정건일 지금 현재 가능한 기종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헬기에 따라서는 배면물탱크 작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단다고 능사가 아니고 헬기 안전도 고려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노후화돼서 곧 폐기해야 되거나 교체해야 될 헬기에다가 비싼 것을 22억씩 주고 달 필요는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면물탱크로 얻는 효과가 10이라면 이 바꾸니 효과도 한 6은 있을 것 아니야?

○소방청소방항공과장 정건일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 활용하면 되겠지. 무조건 국가예산을 많이 투입해 갖고 그걸로 전부 교체하려고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청소방항공과장 정건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이걸 좀 정리를 하지요.

그래서 지금 제도개선 말고 주의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제도개선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시잖아요?

○진종오 위원 주의는 어떤 위원님이 주셨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박상웅 위원님은 제도개선인데 이광희 위원님께서서는 아마 주의로 하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광희 위원 지금 헬기는 소방청에 있는 소방헬기는 약 35대 정도고요. 그리고 물을 뿌리는 것은 산림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큰 고도의 큰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 산림청 헬기가 50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 50대 중에 산 속에 물을 뿌리는 헬기가 따로 있고 그것 외에 시·도에 35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물 뿌리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5대에서 6대 정도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었으니 저는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웅 위원 어떻게 위원님보다 소방청이 더 몰라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제 불찰입니다. 제가 꼼꼼히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는 산림학 박사라서 그쪽 부분은, 산불과 관련해서는 제가……

○박상웅 위원 산림학 박사는 산림을 우거지게 잘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이광희 위원 불 끄는 것도……

○소위원장 박주민 오늘 보니까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왜 이렇게 직무대리가 많으세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원래 차장이 왔어야 되는데 차장이 이틀 전에 승진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아니, 그게 아니라 대리, 직무대리, 직무대리라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은 저희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요구를 안 굽히시는데요.

○이광희 위원 아니요,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제도개선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 제도개선 이걸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잠깐만 연번 5번 질문 좀 할게요.

여기 119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있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서명옥 위원 이게 사고 때문에 이월됐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금 하고 있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지금은 완료가 됐습니다.

○서명옥 위원 완료 다 됐어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서명옥 위원 그러면 이게 구급차에 지금 이 시스템이 올라가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렇지요? 아직 업무 파악을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구급차에 이 스마트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탑재돼 가지고 이게 병원하고 통신하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병원하고 통신 잘되고 있어요? 병원 측에서는 이것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병원하고 통신이 되려면……

○소위원장 박주민 서명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깐 이석을 해야 돼서 이광희 위원님께서 잠깐 사회를 좀 봐 주셔서…… 아마 마무리까지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광희 위원 끝내면 되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끝내시면 돼요.

(박주민 소위원장, 이광희 위원과 사회교대)

○서명옥 위원 그래서 병원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리고 병원에도 뭔가 통신장비가 여기하고 호환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구급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소방청119구급과장 김인균 119구급과장 김인균입니다.

저희가 현재 병원에 스마트시스템을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서명옥 위원 이 예산으로?

○소방청119구급과장 김인균 예, 설치를 해서…… 과거에는 저희가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갔다가 환자를 이송하면 수기로 다 썼습니다.

○서명옥 위원 예, 알아요.

○소방청119구급과장 김인균 수기로 써서 떼서 주고 저희는 가져왔는데 이걸 시스템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탭에다가 작성하면 이 작성한 내용이 병원에 저장되는 스마트시스템에……

○서명옥 위원 그래서 그것 구축된 병원은 몇 개 정도예요?

○소방청119구급과장 김인균 저희가 그걸 설치한 병원이 지금 한 400여 개 정도 됩니

다.

○서명옥 위원 400여 개나 돼요?

○소방청119구급과장 김인균 예.

○서명옥 위원 그런데 설치하고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그게 문제인데.

○소방청119구급과장 김인균 활용되는 부분은 Pre-KTAS 기준으로 봤을 때 3단계 이하 지역기관급에서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중한 환자를 주로 안 받고 경한 환자를 받고 있어서요.

○서명옥 위원 그러면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하고 여기하고 통신이 가능한 병원의 리스트하고……

구축이 언제 완료됐지요?

○소방청119구급과장 김인균 예?

○서명옥 위원 언제 완료됐지요, 구축이?

○소방청119구급과장 김인균 구축은 25년도에 완료됐고 지금 고도화 사업 중입니다.

○서명옥 위원 그래요?

○소방청119구급과장 김인균 예.

○서명옥 위원 그러면 25년 9월에 구축 완료됐어요? 구축 완료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병원하고 통신하고 서로 소통한 것 건수 좀 정리해서 보내 주세요.

○소방청119구급과장 김인균 예, 완료 시점부터 그것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광희 다 하셨나요?

○서명옥 위원 예.

○소위원장대리 이광희 그러면 7번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부터……

○전문위원 김세현 그러면 세출 8번·9번 및 부대의견 2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사업입니다.

국가 주요 항만인 부산신항과 울산항에 국가항만 소방정대를 신설하고 소방선박 2척을 도입하여 선박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선박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감리비 증액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해당 업체가 부담하도록 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국가가 이를 부담했다는 지적입니다. 이광희 위원으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품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책임감리 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감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공급업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근거를 명시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연번 9번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화재안전 및 시설 기준개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입니다.

소방청은 소방의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24년에 교부받은 금액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25년으로 이월하였고 25년 6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1월에 선금만 집행한 후 7

억 4800만 원을 불용 반납했습니다. 교부액의 54.8%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사업은 인구가 적고 지리적 거리가 넓은 도 단위 광역지자체에서 실집행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화재안전 및 시설 기준개발 사업 중 25년의 추경으로 편성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지원 사업은 산불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인데, 소방청은 국고보조금 51억 6300만 원을 지자체에 일괄 교부하였으나 실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전체 예산의 60.4%가 이월되었습니다. 용혜인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소방청은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집행지연 등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화재안전 및 시설 기준개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사업의 보조금이 연내에 집행되지 않는 사유를 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또한 시정요구되었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부대의견 2건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19항공정비실 건립 관련 내용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가 이광희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를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였고 그리고 박정현 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부대의견은 소방청은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에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는바 사업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항공정비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청년인턴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 부분이고 이 부분은 경찰청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방청은 청년인턴의 채용 미달 및 중도 퇴사로 인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근무환경 개선, 업무환경·업무경험 제공 등을 통해 청년인턴이 실제로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 내용입니다. 강명구 위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이광희 소방청 의견 부탁드립니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연번 8번입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품 공급업체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우리가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부대조건이나 특약 같은 데에 자세하게 해서 국민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반성하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9번은 용혜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의 사례, 즉 우리가 이월 등을 최소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주의 겸허하게 수용하고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뚜렷하게 효과적인 대책,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 왔다는 것에 반성하면서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광희 주의, 제도개선 다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다 수용하겠습니다. 각각 개별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1번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연번 1번의 이광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동일 건이라서 병합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이광희 이건 부대의견에서 빼도 되겠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병합해 갖고 앞의 제도개선 것과 묶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두 번째, 부대의견 2번 청년인턴제도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광희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상식 위원 저는 의견 없습니다.

○서명옥 위원 저도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광희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그냥 할까요?

○이상식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대리 이광희 그러면 부대의견 1번의 경우 제도개선으로 합쳐서 하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미 반영이 돼 있어서.

○전문위원 김세현 3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광희 3페이지 1번입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예, 3페이지 1번에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광희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청 2025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소위가 논의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소위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전체회의 의결에 필요한 심사보고자료 작성과 자구 수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상웅 박주민 서명옥 이광희 이상식 진종오 채현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전문위원 황승기

전문위원 김세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성과관리담당관 김종수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재난관리정책국장 황범순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훈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장 권승진

경찰청

차장 유재성
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인권감사관 권기대
생활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이서영
국제치안협력국장직무대리 박준성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이영철
수사국장직무대리 박우현
인사담당관 여태수
복지정책담당관 강은미
재정담당관 이광진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박희동

경찰병원

의료경영기획실장 남궁원철

소방청

차장직무대리 김재홍
기획재정담당관 이상근
인공지능융합담당관 이진현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장 김창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장영수
기획운영관 김준희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박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
기획국장 김인수